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목 차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1
제 2조 적용원칙	1
제 3조 정의	1

제2장 단체표준심사위원회 등

제 4조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1
제 5조 단체표준 인증위원회	2
제 6조 단체표준 공평성위원회	2
제 7조 단체표준 위원회 운영 절차	3

제3장 단체표준의 제정 등

제 8조 단체표준의 제정·등록	3
------------------------	---

제4장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조직 등

제 9조 인증단체의 요건	4
제10조 인증단체의 조직 등	5
제11조 인증단체의 직원 등	5
제12조 인증심사원의 자격 운용 등	6
제13조 제품검사원의 자격운용 등	6
제14조 시험·검사의 위탁	7

제5장 단체표준인증심사 등

제15조 단체표준 인증 등	7
제16조 인증심사기준	7
제17조 단체표준인증신청 등	7
제18조 신청의 철회 및 반려 등	8

제19조 단체표준 인증심사	8
제20조 공장심사	9
제21조 공장심사 일부면제 등	9
제22조 제품심사	9
제23조 제품 품질시험 일부생략	10
제24조 공장심사보고서 및 부적합사항 처리 등	10
제25조 인증의 결정 및 인증계약의 체결	11
제26조 단체표준 인증표시	11
제27조 인증 추가 또는 변경	12

제6장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등

제28조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13
제29조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절차	13

제7장 정기심사 등 사후관리

제30조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14
제31조 시판품조사 및 특별공장심사 등	14
제32조 지위승계의 신고 등	15
제33조 문서의 비치·보존	15
제34조 보고 등	15
제35조 처분	16
제36조 인증의 취소	16
제37조 소비자 보호 및 불만처리	16
제38조 인증수수료 등	17
제39조 단체표준인증단체 자체점검	17
제40조 단체표준인증단체 경영검토	17
제41조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18
제42조 단체표준인증단체 변경사항 보고 등	18

제8장 단체표준화 활동 촉진 등

제43조 표준화활동 촉진	19
제44조 단체표준의 전환	19
제45조 품질관리담당자 자격 등	19
제46조 단체표준화 교육내용 등	19
제47조 심사위원회 위원 및 심사원의 여비	19

부칙

제1조 시행일	19
---------------	----

부칙

제1조 시행일	20
---------------	----

별 표

[별표 1] 단체표준인증심사 기준	21
[별표 2] 인증심사 결과 판결 기준	34
[별표 3]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35
[별표 4] 인증 받은 자에 대한 처분 기준	37
[별표 5] 단체표준 표시인증 관련 수수료 및 비용	39
[별표 6] 품질방침	41
[별표 7] 공정성 선언문	42
[별표 8] 단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의 내용·시간·주기	43

별 지

[별지 제 1호 서식] 승낙서	44
[별지 제 2호 서식] 서약서	46
[별지 제 3호 서식] 위촉장	47
[별지 제 4호 서식]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등록 신청서	48
[별지 제 5호 서식]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증	49
[별지 제 6호 서식] 단체표준 제정(개정·폐지) 신청서	50
[별지 제 7호 서식] 단체표준안 타당성 조사표	51
[별지 제 8호 서식] 심의의뢰서	54
[별지 제 9호 서식] 회의록	55
[별지 제10호 서식] 심의완료 통지서	56
[별지 제11호 서식] 단체표준 현황록	57
[별지 제12호 서식]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58
[별지 제13호 서식] 자체점검보고서	61
[별지 제14호 서식] 단체표준 표시인증 인증심사 신청서	62
[별지 제15호 서식] 단체표준 표시인증 인증심사 신청접수대장	63
[별지 제16호 서식] 단체표준 표시인증 인증심사 대장	64
[별지 제17호 서식] 공장심사보고서	65
[별지 제18호 서식] 제품심사보고서	79
[별지 제19호 서식] 단체표준 인증마크 사용에 관한 계약서	85
[별지 제20호 서식] 단체표준 제품인증서 발급대장	90
[별지 제21호 서식] 단체표준 제품인증서	91
[별지 제22호 서식] 단체표준인증공장 관리기록부	92
[별지 제23호 서식]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 발급신청서	93
[별지 제24호 서식]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신청 접수대장	94
[별지 제25호 서식]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심사 대장	95
[별지 제26호 서식]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심사 보고서	96
[별지 제27호 서식]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	102

[별지 제28호 서식]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대장	103
[별지 제29호 서식] 지위승계신고서	104
[별지 제30호 서식] 특별공장심사 신청서	105
[별지 제31호 서식] 재발급(변경) 신청서	106
[별지 제32호 서식] 이의/불만 접수대장	107
[별지 제33호 서식] 이의/불만 처리요청서	108
[별지 제34호 서식] 단체표준 표시인증 제품 ()년도 생산실적보고서	109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개정 : 2019년 8월 26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동법 시행규칙 제20조(단체표준 인증업무) 및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정관 제22조의3(단체표준 및 품질인증)에 따라 적정하고 합리적인 단체표준을 제정 보급함으로써 제품의 품질 고도화, 생산효율의 향상 및 생산기술의 혁신을 기하며 거래의 단순 공정화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단체표준 제품 및 서비스 인증, 우수단체표준제품과 확인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원칙) ① 조합은 단체표준 인증단체로서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이 규정은 단체표준 인증관련 산업표준화법, KS Q ISO/IEC 17065 적합성평가 - 제품 및 서비스 인증에 대한 일반요구사항(이하 "일반요구사항"이라 한다)에 기반하여 작성하였다.

③ 산업표준화법 및 관련 규정이 상충될 경우, 산업표준화법, 관련 규정, KS Q ISO/IEC 17065의 순서로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단체표준" 이라 함은 단체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하며, 국가표준과 사내표준 사이에서 국가표준을 보완하고 제조자, 판매자, 유통업자 등의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에 따라 제정·등록한 표준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1. 단체표준 제품의 종류, 형상, 치수, 구조, 장비, 품질, 등급, 성분, 성능, 기능, 내구도, 안전도
2. 단체표준 제품의 생산방법·설계방법·제도방법·사용방법·운용방법·원단 위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조립 및 설치방법·안전조건·안전성
3. 단체표준 제품의 관한 시험, 분석, 감정, 검사, 검정, 측정방법
4. 단체표준 제품의 제조 기술에 관한 용어, 약어, 기호, 부호, 표준 수 또는 단위
5. 단체표준 서비스의 제공절차·방법, 체계, 평가방법
6. 기타 공작물의 설계·시공방법 또는 안전조건

제 2 장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등

제4조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① 조합은 단체표준의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단체표준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준의 적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이사장이 요청한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단체표준 제품 관련 제조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중견 간부 이상인 자
2.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공인 시험 검사기관 또는 관련분야 연구소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정부부처 및 관련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5. 관련분야의 석사·박사 학위소지자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인 자
6.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5조 (단체표준 인증위원회) ① 조합은 단체표준제품 인증 운영업무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조합 내에 단체표준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단체표준 인증의 운영실시에 관한 사항 총괄
2. 단체표준 제품인증의 승인, 유지, 확장,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인증마크 사용 및 중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분야별 인증심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이의 신청 불만처리의 최종해석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현장평가 시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해석에 관한 사항

7. 단체표준 인증의 결정을 좌우할지도 모르는 영리적, 재정적, 기타 압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공평성 확보

8. 인증요구사항의 개발
9. 인증평가결과의 검토 및 인증결정에 관한 사항

③ 인증위원회는 인증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정부기관(당연직) 또는 관계기관
2. 학계
3. 소비자 단체
4. 시험검사·전문기관
5. 생산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
6. 단체표준 인증평가 전문가
7. 조합 전무이사

제6조 (단체표준 공평성위원회) ① 조합은 단체표준 인증업무의 공평성과 신뢰성의 확보를 위하여 조합 내에 단체표준 공평성위원회(이하 “공평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평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인증시스템의 공평성에 대한 방침 및 원칙에 관한 사항

2. 공평성 보장을 위한 조직 및 자원에 대한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3. 인증위원회 심의 내용에 관한 사항
 - 가. 제품인증의 승인, 유지, 확장, 정지 및 취소 등에 대한 인증위원회 활동
 - 나. 적절하고 공평한 제품인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 요구
 - 다.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이사장에게 보고
 4. 기타 제품인증 업무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 ③ 공평성위원회는 인증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정부기관(당연직) 또는 관계기관
 2. 학계
 3. 소비자 단체
 4. 공급단체
 5. 적합성평가 전문가
 6. 조합 전무이사

- 제7조 (단체표준 위원회 운영절차)** ① 이사장은 심사위원회, 인증위원회, 공평성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으며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⑤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회의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인증위원회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장은 심의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심의 내용은 [별지 제9호 서식]의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한다.
- ⑧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의 직원으로 한다.
- ⑨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8조 (단체표준의 제정, 등록)** ① 이사장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따라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체표준안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단체표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2. 관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이사장은 단체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단체표준안을 작성 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단체표준 제정(개정·폐지)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단체표준의 제·개정안
 2. 단체표준안 타당성 조사표 [별지 제7호 서식]
 3. 단체표준안에 대한 설명서
 4. 참고문헌 및 자료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의 형식은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의 단체표준 단체와 표준 보급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친 후 자체안으로 확정한다.
- ⑦ 이사장은 자체안으로 확정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⑧ 이사장은 확정된 제6항의 단체표준안을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라 한다.) 단체표준 활동지원추진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등록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라 등록되는 단체표준의 표준번호는 「SPS-고유번호-일련번호」 순으로 사무국에서 부여한 번호를 따른다. 여기서 SPS는 Standards of Private Sectors를 의미하고,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에서 부여한 번호를 말하며, 일련번호는 등록순서에 따른 번호를 말한다. 다만, 외국의 단체표준단체와 표준보급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외국 단체표준번호도 함께 병기 할 수 있다.
- ⑩ 이사장은 제8항에 따라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정, 개정 또는 확인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단체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단체표준의 개정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3년 이내라도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 4 장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조직 등

제9조 (인증단체의 요건) ①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가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2명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1명은 그 단체에 소속된 인증심사원이어야 한다.

3.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국제기준(KS Q ISO/IEC 17065 적합성평가 - 제품 및 서비스인증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에 기반한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4. 단체표준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함으로써 단체표준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5. 단체표준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험설비와 그 설비를 운용하는 제품검사원을 확보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설비는 단체표준에 규정한 인증품목별 전 항목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의 고가설비인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이하 “공인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설비 사용계약 또는 제품 시험·검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시험·검사업무 협약체결로 제품시험 전체를 의뢰하는 때에는 설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비를 당해 단체가 직접 운용하는 때에는 제품검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증단체의 조직 등) ① 조합은 인증활동의 공평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인증업무규정 및 품질문서를 포함하여, 공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하며, 전담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공평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품질방침 및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표 6]과 같이 품질방침을 정하고 관련 인원이 이해하고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품인증 및 사후관리 등 단체표준인증 제도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보조하고 세부절차를 규정한 단체표준별 품질문서를 작성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품질문서라 함은 KS Q ISO/IEC 17065 요구조건에 따라 작성된 품질문서 등을 말한다.

④ 이사장은 인증활동의 공평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공평성을 저해하는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의 압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⑤ 의뢰(신청)자의 규모 또는 특정 협회나 단체의 회원이어야 한다는 조건, 그리고 이미 인증된 공급자의 수를 이유로 인증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인증단체의 직원 등) ① 이사장은 제품인증, 적용표준 등 인증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증책임자, 인증담당자, 심사원 등 충분한 수의 직원을 고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직원은 조합에 정규적으로 일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조합의 관리시스템 또는 절차 내에서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개별적인 계약 또는 공식적인 협약에 따라 일하는 인원을 포함한다.

② 인증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인증업무의 적합성에 대한 지속적 관리
2.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에 관한 사항
3. 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인증담당자 및 인증심사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5. 인증서의 재교부 및 지위승계
6. 인증 업체에 대한 처분

③ 조합의 직원은 단체표준 인증 업무에 대한 기술적 검증 능력을 보유하고, 인증제도 및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1. 인증책임자 및 직원은 평가된 제품과 관련된 생산과정의 정확한 과학적, 기술적 배경 지식

을 가져야 한다.

2. 인증심사원은 제12조(인증심사원의 자격운용 등) 제1항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3. 제품검사원은 제13조(제품검사원의 자격운용 등) 제1항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 ④ 인증과정에 참여하는 직원의 개개인의 자격, 훈련 및 경험에 관한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 ⑤ 직원은 해당법규 및 인증방법과 절차 등 품질시스템 관리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증심사원의 자격 운용 등) ① 제9조(인증단체의 요건)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6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로 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등록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증명사진 2매
3.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으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심사원의 자격 신청시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심사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2. 심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 전에 단체표준인증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때
4. 인증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 부적합 제품이 인증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
5.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대여한 때

6.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⑤ 이사장은 공정한 인증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인증심사원을 포함한 소속 직원이 제9조(인증단체의 요건)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업무규정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관리 감독하여야 하고, 등록기간이 만료되어 재등록 시는 제1항에서 제3항 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평가 및 확인 후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⑥ 심사원의 등록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⑦ 등록된 심사원은 직무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1년에 7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하는 심사원 교육, 워크숍 또는 세미나
2.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개최하는 심사업무 관련 워크숍 또는 세미나
3. 기타 심사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교육

제13조 (제품검사원의 자격운용 등) ① 제9조(인증단체의 요건)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요원

-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졸업자로 제품시험 관련 업무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이 공정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부정이나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 ③ 제품 검사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검사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정확과 공정을 기해야 한다.
 - 2. 판정결과 및 검사기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 3. 직속 상위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검사업무에 따른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 ④ 이사장은 제품검사원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검사실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토록 할 수 있다.

제14조 (시험·검사의 위탁) ① 이사장이 제9조(인증단체의 요건) 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인증 업무와 관련된 시험·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인시험·검사기관
- 2. 단체표준에 규정한 인증품목별 전 항목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 할 것. 단, 일부 시험·검사 항목만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 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험 검사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위탁기관과 MOU를 체결한 경우 위탁계약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 5 장 단체표준 인증심사 등

제15조 (단체표준 인증 등) ① 단체표준의 해당제품과 서비스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이사장으로부터 단체표준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이사장이 단체표준 인증심사를 시행할 때에는 인증요구사항과 제품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16조(인증심사기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 포장, 용기, 서비스, 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제26조(단체표준 인증표시) 제1항에 따라 그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6조 (인증심사기준) ① 제15조(단체표준 인증 등) 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위한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단체표준별 심사기준은 표준별 특성에 적합한 심사기준(이하 “품목별/분야별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은 조합에서 따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인증심사기준을 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 받은 자”라 한다.)에 대해 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사후관리에는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단체표준 인증신청 등) ① 제15조(단체표준 인증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 단체표준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단체표준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24조(공장심사보고서 및 부적합사항 처리 등) 제4항에 따라 공장심사 결과가 인증추천 불가에 해당되는 부적합인 경우 - 3개월간
 2. 제35조(처분) 제1항, 제36조(인증의 취소)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 1년간
 3. 품질과 관련한 법적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 영업정지 1월은 1년, 영업정지 2월은 2년, 영업정지 3월 이상은 3년
- ② 이사장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서류가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를 받는다.

제18조 (신청의 철회 및 반려 등) ① 제17조(단체표준 인증신청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신청한 자는 공장심사 전에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이사장은 관계서류를 폐기한다. 또한 납부 받은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단체표준인증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장은 관계서류를 반려한다.

제19조 (단체표준 인증심사) ① 이사장은 인증신청자가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 공장심사보고서 평가항목, 제품심사결과, 인증업무규정에서 요구사항 모두가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를 통해 확인한다.

② 조합은 제17조(단체표준 인증신청 등)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과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단체표준제품 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심사로 구분 한다.

1. 공장심사 :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

2. 제품심사 :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

④ 이사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후에 단체표준이 개정되거나 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신청인에게 공지하고 인증신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 단체표준 인증심사 결과 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조합은 공장심사 결과 보완(별지 제17호 공장심사보고서 접수제)으로 판정되면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인증신청자가 부적합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을 완료할 때까지 단체표준인증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아야 한다.

2. 제1항의 부적합 평가항목이 개선될 경우, 공장심사 결과를 적합으로 판정한다.

3. 최초인증의 경우 인증신청자가 부적합 평가항목을 공장심사일로부터 6월 이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 인증단체는 해당 인증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증신청자는 인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4. 조합은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결과, 단체표준 및 해당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제25조(인증의 결정 및 인증계약의 체결)에 따라 인증 불가 또는 부적합(불합격) 결정을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장심사) ① 공장심사는 제12조(인증심사원의 자격 운용 등)에 따른 인증심사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장심사는 최초 인증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제조공장에서 최근 3개월간, 정기심사인 경우에는 최근 1년간, 시판품 조사 및 현장조사에 따른 심사의 경우에는 심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기간의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이 단체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공장심사 일수는 1개 품목이 1일, 2개 또는 3개 품목은 2일, 4개 품목은 3일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공장심사를 위하여 신청업체의 품질시스템에 대한 사전 관련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신규 인증심사(1품목에 한함) 또는 심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조합이 판단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1일 이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인증을 신청한 제품의 제조공장이 다수일 경우 모든 제조공장에 대해 공장심사를 실시하며, 공장심사에서 적합으로 판정 받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만 제품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 (공장심사 일부 면제 등)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조설비, 시험·검사설비, 품질관리담당자 지정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시료채취 시 현장에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이미 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인증 받은 품목 내에서 종류·등급·호칭·모델이 다른 제품에 대하여 인증신청을 한 경우

2. 제20조(공장심사)에 따른 공장심사에는 적합 또는 합격하였으나 제22조(제품심사)에 따른 제품심사는 부적합하여 인증 불가 통보를 받은 후 해당 제품(품목)에 대하여 1년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한 경우(단, 제품심사에서 연속적으로 2회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는 공장심사를 행하여야 함)

② ISO 9001 인증기업일 경우에는 공장심사 심사사항 중 품질경영은 생략(적합 “예”로 평가)하고 심사한다. 다만, 생략 받고자 하는 인증기업은 ISO 인증서, 내부심사 결과, 경영검토 결과,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 등 ISO인증기업이 갖추어야 할 주요 문서화된 정보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KS 인증기업일 경우에는 공장심사 심사사항 중 품질경영은 생략(적합 “예”로 평가)하고 심사한다. 다만, 생략 받고자 하는 인증기업은 KS인증서, 최근 사후관리심사 결과, 품질관리 담당자 지정현황,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현황 등 KS 인증기업이 갖추어야 할 주요 문서화된 정보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심사를 생략한 때에는 심사원은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원은 제품심사의 시료채취 시 품질관리담당자,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등을 확인하여 제품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제품심사) ① 제품심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시료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제품 제조공장에서 심사당일 제품 재고 또는 생산 중인 제품 중에서 채취한다.

② 심사원은 채취한 시료를 봉인한 후 시험기관에 제품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시료를 운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제품제조 공장 현장에서 시험을 할 수 있다.

1. 시험기관의 시험이 불필요할 때
2. 시료가 무거운 물건이거나 시료의 운반이 곤란할 때
3. 시료의 이동이 시험결과에 영향을 주는 시험을 실시할 경우

③ 심사원은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에 따라 채취한다. 다만, 공장심사에서 보완 사항 발생 시 심사원의 판단에 따라 시료 채취를 보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은 조합에서 자체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14조(시험검사의 위탁)에 따른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 할 수 있다.

⑤ 조합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제품심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품검사원 자격에 합당한 자로 하여금 시험을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제4항의 외부 시험기관에 시험의뢰 시, 시험기관은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심사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제품 품질시험 일부 생략) 인증신청자가 인증대상 공장에서 생산한 시료로 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시험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험항목의 경우
2. 인증심사 당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시험항목으로 단체표준요구수준 이상의 경우
3. 제품에 사용된 재료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재료의 시험의 경우

제24조 (공장심사보고서 및 부적합 사항 처리 등) ① 심사원은 공장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공장심사보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장심사에서 부적합 사항을 발견한 경우 공장심사보고서에 규정된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고, 인증신청자에게도 부적합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장심사 결과 부적합/보완사항이 발생된 경우 신청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 내에 부적합/보완사항에 대한 개선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심사원의 확인을 받아 부적합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완 사항 발생시 : 1개월 이내
2. 부적합 발생시 : 6개월 이내

③ 공장심사 사항 중 “핵심품질”에 대한 부적합 사항은 개선조치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심사하여야 하며, 개선조치가 ‘완료’로 판단되면 부적합개선조치보고서를 공장심사보고서와 함께 조합에 제출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제38조(인증수수료 등)에 따른 인증심사원 출장비 및 수수료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④ “핵심품질”에 대한 부적합이 3개 이상 발생된 경우 해당 심사원은 신청업체에 인증을 위한 인증위원회 추천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인증불가로 판정하여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인증불가로 결정된 업체는 최소 3개월 이내에 재신청이 불가하다.

⑤ 다만, 점수제 공장심사의 경우 평가 결과 100점 만점 중 총 평점이 60점(제21조에 따라 공장심사의 일부가 생략되는 경우는 나머지 심사항목 배점 합계의 60%)미만일 경우 해당 심사원은 신청업체에 불합격으로 인증위원회 추천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인증불가로 결정된 업체는 최소 3개월 이내에 재신청이 불가하다.

- 제25조 (인증의 결정 및 인증계약의 체결)** ① 인증의 결정은 제19조(단체표준 인증심사)의 심사결과 판정기준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정한 단체표준 인증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조합은 인증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인증신청자에게 문서, 전자매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공장심사보고서와 제품심사 결과 및 보완/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을 요청한다.
- ③ 조합은 단체표준인증을 결정한 경우, 단체표준인증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에 관한 계약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와 체결한다.
- ④ 조합은 제3항에 따라 인증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경우 적어도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의 인증업무에 관한 계약임을 명시
 2. 인증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3. 단체표준 인증마크 등의 표시사항에 관한 사항
 4. 인증 받은 자의 인증제품광고에 관한 사항
 5. 인증 받은 자의 조합에 보고사항 및 시판품 조사, 제품수거, 판매중지 등에 관한 사항
 6. 인증 취소, 인증 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7. 심사주기 준수, 수수료 납부 등 조합이 인증업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8.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 ⑤ 조합은 인증계약이 종료되면 인증 받은 자에게 다음사항을 알려야 한다. 또한 일반인이 인증종료(취소포함)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인증 계약의 종료일 및 인증 번호
 2. 종료한 인증 계약에 관한 인증 받은 자의 공장명(회사명) 및 소재지
 3. 제품인증서의 발급 시 기재사항
 4. 단체표준인증마크 등의 표시사항
- ⑥ 조합은 제품이 단체표준 및 해당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결정하여 인증 신청자와 인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증번호, 제조업체명, 대표자성명, 공장 소재지, 인증제품의 표준명 및 표준번호, 인증제품의 종류·등급·호칭·모델·단체표준인증에 관계되는 근거조항, 인증서 교부일, 인증기관명 등을 기재한 [별지 제21호 서식]의 단체표준 제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⑦ 제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조합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이 폐지된 경우
 2. 해당 인증이 취소된 경우
 3. 폐업한 경우
 4. 인증 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인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5. 인증 관련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⑧ 제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그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재발급(변경) 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며, 인증서 및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6조 (단체표준 인증표시)** ① 제15조(단체표준 인증 등)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품에 표시 할 수 있다.

1. 단체표준의 명칭 및 번호
2. 단체표준에서 정하는 제품의 종류, 등급, 호칭
3. 단체표준 인증번호
4. 인증 받은 자의 판매처 및 제조처, 제조일
5. 인증단체명
6. [별표 3]의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② 인증을 받은 자는 그 공장의 사무실에는 발급받은 인증서를, 그 공장의 정문에는 표시판을 각각 게시할 수 있다.

③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조합에서 자체인증표시 도표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자체인증표시 도표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사무국에 도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④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 또는 선전을 위한 인쇄물에 당해 제품이 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진열, 보관 또는 운반한 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27조 (인증 추가 또는 변경) ① 인증 받은 자가 품목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조합은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인증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25조(인증의 결정 및 인증계약의 체결)에 따라 인증결정 시 인증계약을 변경하고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인증 받은 자가 이미 인증 받은 제품(품목)의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을 추가할 목적으로 인증을 신청한 경우 조합은 지체 없이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해당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에 관한 것에 한한다.)하여 그 결과를 인증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 경우, 공장심사시 심사사항의 일부(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제조설비 관리)의 평가를 생략(적합 “예”로 평가) 한다. 다만, 자재 또는 공정·제조설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조합은 해당 평가항목을 심사할 수 있다.

⑤ 조합은 제25조(인증의 결정 및 인증계약의 체결)에 따라 인증결정시 인증계약을 변경하고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인증 받은 자가 제품생산을 위한 주요 자재를 변경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증 받은 자는 제품(품목)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에 따라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사항을 기록한 자재관리 목록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증 받은 자는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모듈 및 재료 등)을 조합에 심사 전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심사 후에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 자재의 변경으로 인해 제품의 성능의 변화가 예상될 경우에는 조합은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 받은 자에게 시험성적서 제출, 제품시험 실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인증 받은 자가 주요 자재관리 목록의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한 경우, 조합은 해당 제품(품목)이 단체표준에 현저히 맞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 6 장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등

제28조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①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8조(우수한 단체표준제품)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한다.

1. 단체표준인증을 받고 3개월 이상 생산실적이 있는 제품일 것
2.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로 인정받은 인증단체(조합)의 단체표준제품일 것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검사기관에 품질시험을 받아 합격한 단체표준제품일 것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인정받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조합)는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8조(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제2항에 따라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조합)로부터 단체표준인증을 받고 3개월 이상의 생산실적이 있는 제품은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조합은 신청된 제품이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⑥ 제25조(인증의 결정 및 인증계약의 체결), 제32조(지위승계의 신고 등)의 규정은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의 반환, 재발급 및 지위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 ⑦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의 발급내용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거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대장에 인증업체별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⑧ 제2항 내지 제6항은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신청에 준용한다.
- ⑨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처분) 제1항 및 제36조(인증의 취소)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도 자동 취소되며,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재발급 확인심사가 진행된 경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단체표준인증 최초인증일자 기준으로 잔여 2년으로 한다.

제29조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절차) ① 조합은 제28조(우수한 단체표준 제품)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원으로 하여금 제품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원은 1인 이상으로 하고 심사일수는 1일로 한다.

- ② 제22조(제품심사)의 규정은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을 위한 제품심사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단,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품질시험을 받아 합격한 단체표준제품이어야 하며, 제품시험비용 및 운반비는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 신청자가 부담한다.
- ③ 심사원은 제품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제품시험성적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정기심사 등 사후관리

- 제30조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의 사후관리)** ① 조합은 사후관리로서 단체표준인증공장 및 표시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장심사는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제품심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인증스킴, 품질수준 등이 다를 경우에는 단체표준인증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국의 단체표준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의 단체표준인증공장 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조합은 단체표준인증을 한 제품이 그 단체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제품의 수리·교환 또는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조합은 당해 연도 초에 제품심사 대상 업체에 대해 조합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를 해당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사후관리 실시결과 단체표준 인증기준에 부적합일 경우에는 단체표준인증 부적합 처분 및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 받은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또는 그 공장 이전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⑦ 인증 받은 자가 사후관리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 서식] 단체표준인증 신청서에 따라 최초 인증 받은 인증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사후관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⑧ 조합은 정기심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심사일정 및 심사원을 통보해야한다.
- ⑨ 인증 받은 자의 공장이 부도, 폐업, 기타사유로 공장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서면조사로 정기심사를 갈음하고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 ⑩ 사후관리의 공장심사와 제품심사 및 사업장심사와 서비스 심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공장심사), 제22조(제품심사)를 준용한다.

제31조 (시판품 조사 및 특별공장심사 등)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시판품 조사 또는 특별공장심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인증제품의 품질저하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인증 받은 제조공장이 부도, 폐업 등으로 인증제품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생산 납품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품질수준유지를 위하여 이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34조(보고) 제1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5. 공장을 이전 및 추가, 변경한 경우
6.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소비자단체 등 납품수요처인 공공기관으로부터 제품시험결과 부적합인 경우

② 시판품 조사 및 특별공장심사는 제20조(공장심사), 제22조(제품심사)를 준용한다.

③ 시판품 조사 및 특별공장심사 결과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5조(처분)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공장심사를 받아야 할 자는 조합으로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거 특별공장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지위승계의 신고 등) ① 제15조(단체표준 인증 등) 및 제28조(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공장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공장을 양수받은 자,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인증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9호 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 제품인증서(당해품목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단체표준제품인증서 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

제33조 (문서의 비치·보존) ① 인증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2. 인증제품의 자체검사 실적에 관한 서류
3. 인증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② 조합은 단체표준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각 호의 관계서류에 대한 보존 기간은 3년으로 한다.

1. 단체표준인증 신청시 제출받은 서류
2.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에 관한 서류
3. 인증위원회 평가 서류
4. 사후관리에 관한 서류
5. 인증업체 현황 및 인증범위와 인증일자
6. 기타 단체표준인증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34조 (보고 등) 인증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단, 제4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제5호의 경우 다음연도 1월 31일 까지 보고 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 제조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 다만, 3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중단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2. 인증제품 제조를 다시 시작한 날짜(인증제품 제조를 중단한 자가 그 제조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제품 제조공장의 이전을 마친 날짜(인증제품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제35조(처분)에 따라 부적합에 대한 처분에 따른 시정결과

5.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한 연간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 생산실적 및 품질관리 활동 결과

제35조 (처분) ① 조합은 제30조(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의 사후관리) 및 제31조(시판품조사 및 특별공장심사 등)에 따른 사후관리 및 시판품 조사와 특별공장심사 결과 판정기준에 부적합한 때 인증 받은 자에 대한 처분은 [별표 4]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하여 행정처분 이전에 자진반납을 신청한 경우에도 제1항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처분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권고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결과보고서와 그 증빙서류로서 확인하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제38조(인증수수료 등)에 따른 인증심사원 출장비 및 수수료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장심사결과 처분기간 내에 적합으로 판명된 경우는 처분기간 만료일에 처분을 해제하며, 부적합으로 판명된 경우는 지체 없이 인증을 취소한다.

⑤ 제33조(문서의 비치·보존) 제1항 및 제34조(보고) 불이행에 따른 처분은 [별표 4] 처분기준에 따른다.

제36조 (인증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30조(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의 사후관리)에 따른 사후관리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35조(처분)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부도, 폐업 등으로 인증제품 생산 납품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제35조(처분)에 따라 인증 받은 자의 처분 중 인증취소에 해당되는 경우

제37조 (소비자 보호 및 불만처리) ① 조합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제품 품질에 하자가 있어 소비자가 불만을 초래한 경우, 제조자와 협의하여 그 제품의 수리 교환 또는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단체표준 인증제품이 단체표준에 맞지 않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표준인증제품 생산공장에 대하여 특별사후관리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급자 및 기타 당사자가 단체표준 인증과 관련하여 조합에 제기한 이의, 불만 및 분쟁은 조합의 이의제기, 불만 및 분쟁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이의 제기, 불만 및 분쟁과 관련하여는 산업표준화법 제39조(이의신청) 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④ 조합은 이의제기 및 불만의 조사에 공정하여야 하며 조사의 공정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연관성이 있다면 당해 심사에 참여한 인원은 이의제기 또는 불만을 조사하는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의제기, 불만 및 분쟁처리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⑤ 조합은 이의제기 및 불만 접수대장[별지 제32호 서식]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접수된

이의제기, 불만 및 분쟁의 처리에 관련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이의 제기, 불만 및 분쟁의 원인이 인증시스템의 부적합 사항으로 확인되면 조합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의/불만조치 요청서는 [별지 제33호 서식]을 사용한다.

⑥ 조합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의제기 또는 불만 처리 절차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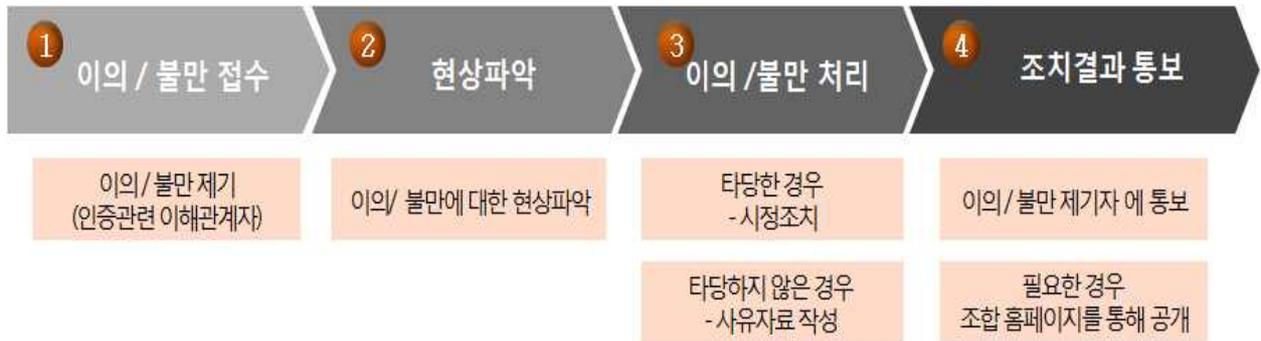


그림 1. 이의제기, 불만 및 분쟁처리 절차

제38조 (인증수수료 등) ① 제17조(단체표준 인증신청 등)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와 제 30조(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의 사후관리)에 따라 사후관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에서 정한 수수료 및 비용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36조(인증의 취소)에 의거하여 인증이 취소되었을 경우, 잔여기간분의 인증수수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39조 (단체표준인증단체 자체점검) ① 이사장은 단체표준 인증심사, 사후관리 업무가 신속 ·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점검 절차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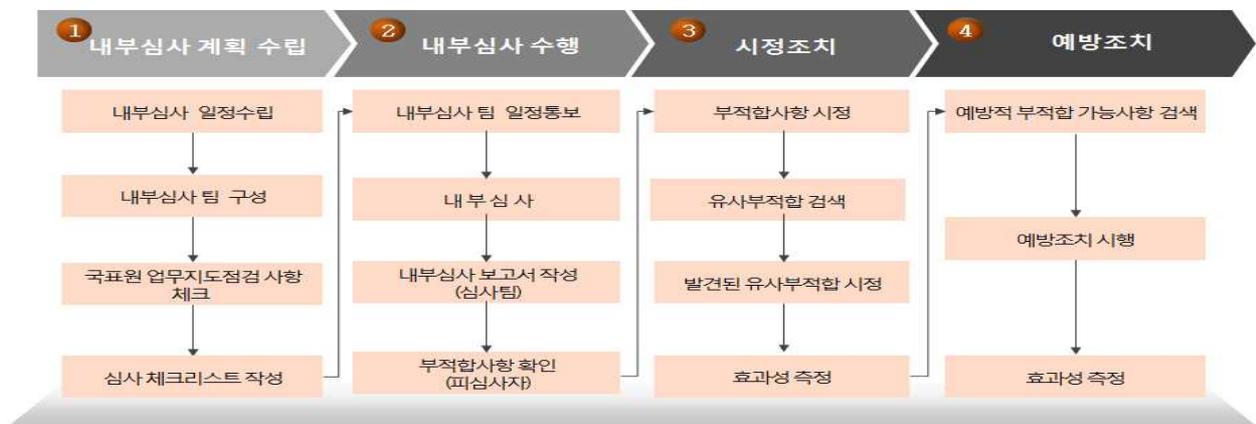


그림 2. 자체점검 절차

제40조 (단체표준인증단체 경영검토) 이사장은 품질시스템이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적절성과 효과성을 보장하는데 충분하도록 연 1회 이상 경영검토 절차에 의거 품질시스템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토 기록은 유지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체점검 결과, 단체표준사무국 지도점검 결과
2. 인증 프로세스의 성과(시험, 검사, 심사 결과 등)
3. 인증심사원별 성과 심사
4. 품질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조직 및 인원 변경 등)
5. 인증서비스 고객의 요구/기대
6. 조직 구조 및 자원의 적정성
7. 타 인증기관 벤치마킹 활동의 결과
8. 위탁계약기관 성과
9. 신제품, 신기술 개발 등 기술적 동향
10. 관련 법규의 동향 등 외부적 경영환경의 변화

제41조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① 이사장은 기관 운영에서 부적합의 확인과 관리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적합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문제점의 영향에 적절히 대응되어야 한다. 시정조치를 위한 절차는 다음 사항의 요구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부적합 확인(예 : 불만 및 자체점검으로부터)
2. 부적합 원인 결정
3. 부적합 시정
4. 부적합이 재발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필요성 평가
5. 필요한 조치를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결정 및 이행
6. 시정조치 결과의 기록
7. 시정조치 유효성 검토

② 이사장은 잠재적 부적합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방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취한 예방조치는 잠재적 문제점의 예상 가능한 영향에 적절하여야 한다. 예방조치 절차는 다음 요구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를 위한 절차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잠재적 부적합 및 원인 파악
2. 부적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필요성 평가
3.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이행
4. 취해진 조치 결과를 기록
5. 취해진 예방조치의 효과성 검토

제42조 (단체표준인증단체 변경사항 보고 등) 조합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양수, 양도 등으로 인한 법적지위 변경
2. 조직 및 주요경영진의 변경
3. 소재지 변경
4.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에 관한 주요 정책의 변경

제 8 장 단체표준화 활동 촉진 등

제43조 (표준화활동 촉진) 조합은 단체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체표준사무국에 단체표준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 (단체표준의 전환) ① 조합은 단체표준 관련제품의 KS표시제품이 특정분야에 국한되어 사용되거나 KS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이를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건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KS가 단체표준으로 전환하거나 통합되는 경우, KS 인증제품은 (우수)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인증(확인)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인증 받은 업체는 전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0조(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의 사후관리)에 따른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 등) ①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술사, 품질경영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2.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30조(산업표준화 교육내용)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담당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② 품질관리 업무담당자의 지속적인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자는 3년마다 단체표준사무국 또는 조합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 담당자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단체표준화 교육내용 등) ① 제15조(단체표준 인증 등) 및 제17조(단체표준 인증신청 등)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단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주기는 [별표 8] 서식과 같이 정하며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간부교육(생산·품질부서의 팀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2.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및 정기교육
3. 단체표준담당자 교육
4. 인증관리담당자 교육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사무국에서 실시하며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받은 경우 제45조(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 등) 제1항 제2호의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7조 (심사위원회 위원 및 심사원의 여비) ① 심사위원회 위원의 여비는 조합 회의수당지급기준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체표준 인증심사 기준

해 당 표 준 번 호	SPS-KLIC 001-0772 : 2018
	SPS-KLIC 002-0773 : 2018
	SPS-KLIC 004-0775 : 2018
	SPS-KLIC 005-0776 : 2018

해 당 표 준 명	석화질 비료
	채강용 생석회 및 경소백운석
	배연 탈황용 석회석
	규산질 비료

제 정 연 월 일	2015년 6월 30일
-----------	--------------

개 정 연 월 일	2019년 1월 15일
-----------	--------------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1. 일반 심사기준

가. 품질경영 관리

심사사항	구비요건
1) 사내표준화·품질 경영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책임자는 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기업의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은 단체표준을 기반으로 회사 규모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하고 회사 전체 차원에서 적용해야 한다. ○ 품질경영의 추진계획은 해당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의 요구 수준이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입안하여야 한다.
2)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경영을 총괄하는 품질경영부서(임직원 10인 이하 기업은 품질관리담당자)는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제안활동 또는 소집단 활동 등을 통해 품질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 활동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을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경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자재 관리

심사사항	구비요건			
	검사항목	자재품질기준	검사방법	이행사항
주요자재명	표준에서 정한 주요 자재를 포함하여 정하여야 한다.	자재의 품질기준 및 안전성은 생산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자재의 검사방법 및 항목은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품질 관리기법을 활용하여 정하여야 한다.	사내표준에 의하여 자재를 인수할 때의 품질검사(이하 이표에서 “인수검사”라 한다) 및 자재관리를 하고, 자재를 관리하는 자가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KS표준 표시제품 또는 단체표준 표시품은 인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양질의 자재라고 인정될 때에는 공급하는 업체의 시험성적서로 인수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3. 부품을 자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인수검사를 공정관리로 대체할 수 있다. 4.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 기술의 개발로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 하거나 검사항목을 증감할 수 있다. 5. 위 4번과 같은 경우 인증단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사항을 인증단체에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한 경우 인증단체는 해당제품이 단체표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 공정·제조설비 관리

심사사항 주요자재명	구 비 요 건			
	검사 또는 관리 항목	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	이행사항	제조작업표준
표준에서 정한 주요 공정을 포함하여 정하여야 한다.	단체표준에 따른 주요 공정명 및 공정별 검사 또는 관리항목, 주요 제조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중간 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사내표준에 따라 검사·관리를 하여 그 기록을 활용하고 공정관리자가 규정대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각 공정에 대하여 사용설비, 작업방법, 작업 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비 고 1. 공정에 대해서는 외주가공을 허용하되, 외주가공을 하려는 자는 그 공정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보증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증단체는 공장심사 시 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2.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 보수, 윤활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공정관리에서 외주가공이 허용된 경우에는 제조설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3.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제품 관리

심사사항 주요자재명	구 비 요 건			
	제품 설계 및 개발 절차계획	제품 품질검사 항목	검사방법	이행사항
정한 품질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품의 설계 및 개발 절차를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제품의 검사항목 및 품질기준을 구체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해야 하고, 제품의 품질기준은 단체표준에서 정한 품질검사 항목을 포함하여 그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제품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단체표준에 규정된 적절한 검사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가) 사내 표준에 따라 제품의 설계 및 개발을 이행하고, 관련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유지해야 한다. 나) 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 표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공정 개선 및 제품의 품질 향상에 활용해야 한다. 다) 제품시험 검사자가 단체표준 및 사내표준에 따라 시험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비 고 1. 중간검사와 중복되는 제품검사의 항목은 중간검사로 같음할 수 있다. 2. 제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시험한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경우 그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제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심사원은 제품 시험검사자의 시험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의 주요 검사항목에 대한 현장 입회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4. 공장심사와 별도로 제품의 설계평가가 필요한 경우, 단체표준에 따른 품목별 인증심사기준에 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마. 시험·검사설비 관리

주요설비명	구 비 요 건
<p>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주요 시험·검사설비를 포함하여 시험·검사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단체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 설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설비의 정밀도, 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국가표준 기본법 제3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교정을 실시하되, 사용빈도, 측정기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시험·검사설비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밀도 및 정확도를 시험·검사하기 위하여 시험·검사 설비의 설치장소가 적당하고, 시험·검사설비의 사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검사설비 관리자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지 않아, 외부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용계약을 체결 및 외부공인기관을 이용한 의뢰 시험을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p>비 고</p> <p>1. 단체표준에 따른 품목별 인증심사기준에 주요시험·검사설비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p> <p>2. 제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외부설비를 사용하거나 외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를 대신하는 경우 그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검사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인시험기관을 제외한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 공장심사 시 외부설비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p>	

바. 소비자 보호 및 환경·자원 관리

심 사 사 항	구 비 요 건
1) 소비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례를 경로를 추적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비자에게 제품의 사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보상에 대해 처리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2) 환경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표준에 따른 제품 요구사항의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청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 회사 전체적으로 실행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작업능률의 향상과 종업원의 안전 및 복지를 고려한 작업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3) 자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종업원에게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생산·품질경영부서의 경영간부에 대한 표준화 및 품질경영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실적이 있어야 한다. ○ 업종과 규모에 적합하고, 품질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격 있는 품질관리 담당자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품질관리 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 사내표준의 제정·개정 등에 대한 총괄 - 상품 및 가공품의 품질수준 평가 - 각 공정별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도·조언 및 부문 간의 조정 -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조치, 개선대책에 관한 지도 및 조언 - 종업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추진 - 부품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언 - 불합격품 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 및 시험업무 관장

사.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1) 시료채취 내역

표준번호	표준명	제품명 (모델명)	재고량	시료크기	시료수 (로트번호)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2) 샘플링(시료 채취) 방식 :

2. 단체표준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

가. SPS-KLIC 001-0772 석회질 비료

1) 품목별 특성을 고려할 때 별표 1. 인증심사기준 중에서 일부 변경이 필요한 사항
가) 자재관리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조의2(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에 따른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를 기재하고 보존(전자적 방법을 통한 기재와 보존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비료 제조 원료 장부는 이 규정 제27조 제6항 제2호에 의한 주요 자재관리 목록으로 제출할 수 있다.

나) 공정관리

- 석회고토 비료 과립상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부 고시) 별표 2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159 토양개량제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품목별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 절차·방법 등 단체표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검사항목	로트의 크기	시료의 크기 (n)	판정기준	
			Ac	Re
SPS-KLIC 001-0772에 규정된 전항목	비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시료 채취기준을 따름	n = 2	0	1

4)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경부적합, 중부적합, 치명부적합)

표준번호	검사항목	경부적합	중부적합	치명부적합
SPS-KLIC 001-0772	주성분 또는 보증성분량 기준미달 - 1 % 이상 10 % 미만 - 10 % 이상 30 % 미만 - 30 % 이상	○	○	○
	유해성분(개별기준)량 기준초과 - 1 % 이상 10 % 미만 - 10 % 이상 30 % 미만 - 30 % 이상	○	○	○
	그 밖의 규격 기준미달 - 5 % 이하 - 5 % 초과 10 % 이하 - 10 % 초과	○	○	○

5) 제품인증표시 방법

상품의 단위	표시장소	표시방법	표시내용
매 포장마다	지대 포장일 경우 왼쪽 상단에 표시하고, bag 및 bulk로 포장할 경우에는 라벨지 또는 납품서에 표시	인쇄 및 실링 등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	1. 인증표시 도표 2. 표준명 및 표준번호 3. 인증번호 4. 제조년월일 5. 제조자명 및 제조장소 6. 실무계 7. 인증기관명

6) 제품의 인증구분(종류 · 등급 · 호칭 또는 모델 등)

단체표준번호	단체표준명	종류 및 등급
SPS-KLIC 001-0772	석회질 비료	소석회 비료 (분말상) 석회석 비료(분말상/과립상) 석회고토 비료 (분말상/과립상) 부산소석회 비료 (분말상) 부산석회 비료 (분말상) 생석회 비료 (분말상/과립상)

나. SPS-KLIC 002-0773 제강용 생석회 및 경소 백운석

- 1) 품목별 특성을 고려할 때 별표 1. 인증심사기준 중에서 일부 변경이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 품목별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 절차·방법 등 단체표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3)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검사항목	로트의 크기	시료의 크기 (n)	판정기준	
			Ac	Re
SPS-KLIC 002-0773에 규정된 전항목	KS L 9015를 따름	n = 2	0	1

4)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경부적합, 중부적합, 치명부적합)

표준번호	검사항목	경부적합	중부적합	치명부적합
SPS-KLIC 002-0773	산화칼슘(CaO) 기준미달			
	- 1 % 이상 10 % 미만	○		
	- 10 % 이상 30 % 미만		○	
	- 30 % 이상			○
	산화마그네슘(MgO) 기준초과			
	- 1 % 이상 10 % 미만	○		
	- 10 % 이상 30 % 미만		○	
	- 30 % 이상			○
	이산화규소(SiO ₂) 기준초과			
- 5 % 이하	○			
- 5 % 초과 10 % 이하		○		
- 10 % 초과			○	

5) 제품인증표시 방법

상품의 단위	표시장소	표시방법	표시내용
매 포장마다	지대 포장일 경우 왼쪽 상단에 표시하고, bag 및 bulk로 포장할 경우에는 라벨지 또는 납품서에 표시	인쇄 및 실링 등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	1. 인증표시 도표 2. 표준명 및 표준번호 3. 인증번호 4. 제조년월일 5. 제조자명 및 제조장소 6. 실무계 7. 인증기관명

6) 제품의 인증구분(종류 · 등급 · 호칭 또는 모델 등)

단체표준번호	단체표준명	종류 및 등급
SPS-KLIC 002-0773	제강용 생석회 및 경소 백운석	생석회 (1급, 2급) 경소 백운석(1급, 2급)

다. SPS-KLIC 004-0775 배연 탈황용 석회석

- 1) 품목별 특성을 고려할 때 별표 1. 인증심사기준 중에서 일부 변경이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 품목별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 절차·방법 등 단체표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3)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검사항목	로트의 크기	시료의 크기 (n)	판정기준	
			Ac	Re
SPS-KLIC 004-0775에 규정된 전항목	KS L 9015를 따름	n = 2	0	1

4)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경부적합, 중부적합, 치명부적합)

표준번호	검사항목	경부적합	중부적합	치명부적합
SPS-KLIC 004-0775	탄산칼슘(CaCO ₃) 기준미달 - 1 % 이상 10 % 미만 - 10 % 이상 30 % 미만 - 30 % 이상	○	○	○
	탄산마그네슘(MgCO ₃) 기준초과 - 1 % 이상 10 % 미만 - 10 % 이상 30 % 미만 - 30 % 이상	○	○	○
	이산화규소(SiO ₂) 기준초과 - 1 % 이상 10 % 미만 - 10 % 이상 30 % 미만 - 30 % 이상	○	○	○
	산화알루미늄(Al ₂ O ₃) + 산화철(III)(Fe ₂ O ₃) - 1 % 이상 10 % 미만 - 10 % 이상 30 % 미만 - 30 % 이상	○	○	○

5) 제품인증표시 방법

상품의 단위	표시장소	표시방법	표시내용
매 포장마다	지대 포장일 경우 왼쪽 상단에 표시하고, bag 및 bulk로 포장할 경우에는 라벨지 또는 납품서에 표시	인쇄 및 실링 등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	1. 인증표시 도표 2. 표준명 및 표준번호 3. 인증번호 4. 제조년월일 5. 제조자명 및 제조장소 6. 실무계 7. 인증기관명

6) 제품의 인증구분(종류 · 등급 · 호칭 또는 모델 등)

단체표준번호	단체표준명	종류 및 등급
SPS-KLIC 004-0775	배연 탈황용 석회석	-

라. SPS-KLIC 005-0776 규산질 비료

1) 품목별 특성을 고려할 때 별표 1. 인증심사기준 중에서 일부 변경이 필요한 사항
가) 자재관리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조의2(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에 따른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를 기재하고 보존(전자적 방법을 통한 기재와 보존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비료 제조 원료 장부는 이 규정 제27조 제6항 제2호에 의한 주요 자재관리 목록으로 제출할 수 있다.

나) 공정관리

- 규산질 비료 과립상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부 고시) 별표 2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159 토양개량제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품목별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 절차·방법 등 단체표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검사항목	로트의 크기	시료의 크기 (n)	판정기준	
			Ac	Re
SPS-KLIC 005-0776에 규정된 전항목	비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시료 채 취기준을 따름	n = 2	0	1

4)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경부적합, 중부적합, 치명부적합)

표준번호	검사항목	경부적합	중부적합	치명부적합
SPS-KLIC 005-0776	주성분 또는 보증성분량 기준미달 - 1 % 이상 10 % 미만 - 10 % 이상 30 % 미만 - 30 % 이상	○	○	○
	유해성분(개별기준)량 기준초과 - 1 % 이상 10 % 미만 - 10 % 이상 30 % 미만 - 30 % 이상	○	○	○
	그 밖의 규격 기준미달 - 5 % 이하 - 5 % 초과 10 % 이하 - 10 % 초과	○	○	○

5) 제품인증표시 방법

상품의 단위	표시장소	표시방법	표시내용
매 포장마다	지대 포장일 경우 왼쪽 상단에 표시하고, bag 및 bulk로 포장할 경우에는 라벨지 또는 납품서에 표시	인쇄 및 실링 등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	1. 인증표시 도표 2. 표준명 및 표준번호 3. 인증번호 4. 제조년월일 5. 제조자명 및 제조장소 6. 실무계 7. 인증기관명

6) 제품의 인증구분

단체표준번호	단체표준명	종류 및 등급
SPS-KLIC 005-0776	규산질 비료	규산질 비료(분말상/사상/과립상) 규회석 비료(분말상/과립상) 광재 규산질 비료(분말상, 과립상)

인증 심사 결과 판정 기준

1. 적용범위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 및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 시판품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2. 판정기준

가. 공장심사(인증심사/사후관리)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보고서의 심사사항별 평가구분상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 중 총평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합격, 60점 이상일 경우 보완,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핵심필수항목 : 5점, 일반품질항목 : 2.5점)

2) 공장심사 평가방식이 적부(적합, 부적합)인 경우 부적합 개선/시정조치를 포함하여 모든 평가항목이 적합해야 한다.

나. 제품심사

1) 인증/사후관리(정기심사)

제품의 품질시험 결과가 단체표준의 인증기준 이상일 경우 적합/합격으로 처리한다.

2) 시판품조사

제품의 품질시험 결과가 단체표준의 인증기준 이상일 경우 적합/합격으로 처리한다.

[비고] 인증심사기준은 단체표준에 따른 품목별 특성에 적합한 심사기준에 따른다.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1. 인증마크

가. 단체표준 표시인증 제품인 경우

인증마크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3(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제20조 제2항 제6호 관련))과 같이 제도하되 마크의 폭에서 0.04를 곱한 값이 테두리 및 원의 두께로 하고 S자는 기울기 20°, 두께는 테두리의 1.5배로 제작하며 단체표준 표시인증마크 하단 네모칸의 품질보증내용은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품 질 보 증

이 제품은 단체표준인증단체인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에서 품질을 보증함

나. 우수단체표준 제품인 경우



품 질 보 증

이 제품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인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에서
우수 단체표준 제품임을 보증함

2. 인증표시판

단체표준 표시인증 공장의 표시판은 아래와 같이 제작한다.

가.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5 cm, 세로 30 cm로 한다.

나. ‘표시품 생산공장’이라는 글자는 고딕체로 한다.

다. ‘인증번호 및 가공기술 품명’이라는 글자는 명조체로 한다.

라. 표시문자와 인증마크의 색은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다.

마. 인증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45 cm, 세로 6 cm의 보조 표시판에 인증번호와 품목명을 적어 표시판 아래에 붙인다.



인증 받은 자에 대한 처분 기준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처분기준이 무거운 위반사항을 적용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또는 연속하여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제32조 1항에 따라 인증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기 전에 그 인증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을 승계한다.
- 라. 제35조 1항에 따른 인증취소를 하는 경우 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표시제거 및 제품수거를 함께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취소	-	-
2. 제33조에 의한 문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자료제출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	개선명령	표시정지 6월	인증취소
3. 인증 받은 자의 변경시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	표시정지 3월	인증취소
4. 품질관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1) 3개월 이상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2) 6개월 이상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 표시정지 3월	표시정지 6월 인증취소	인증취소 -
5. 단체표준 인증표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표시정지 3월	인증취소
6. 제24조에 따른 공장심사 결과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1) 결과가 60점 이상 ~ 80점 미만(핵심품질 3개 미만 부적합) 2) 결과가 60점 미만(핵심품질 3개 이상 부적합)	개선명령 표시정지 3월	표시정지 6월 인증취소	- -
7. 제22조에 따른 제품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1) 부적합 항목이 발생된 경우 2) 검사항목별 결함수준에 따라 처분 - 경결함 검사항목별 결함수준에 따라 처분 - 중결함 검사항목별 결함수준에 따라 처분 - 치명결함	재심사/재시험 개선명령 표시정지 3월 인증취소	표시정지 6월 인증취소	인증취소
8. 표준위반 제품에 사용된 자재, 시설, 또는 공장상태 등으로 보아 표준 위반(중부적합 이상) 사실을 인증 받은 자가 제품생산 이전에 미리 알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인증취소		
9. 생산 중단 기간이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된 경우	인증취소		
10. 부도, 폐업, 표준의 폐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표시품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인증취소		
11. 인증 받은 자가 인증받지 아니한 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인증취소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12. 인증 받은 자가 다른 인증 받은 자의 제품을 당해 공장에서 생산할 경우(다른 인증 받은자의 요청이 확인시 양사 동일 적용)	인증취소		
13. 공장심사, 제품심사 및 시판품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인증취소		
14. 품질과 관련한 법적 요구사항 부적합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 행정처분 - 경고조치 2) 행정처분 - 영업정지 1월 이상	표시정지 6월 인증취소	인증취소	
15. 인증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표시정지 6월	인증취소	

단체표준 표시인증 관련 수수료 및 비용

1. 기본원칙

구 분	금 액
가. 기본수수료	○ 인건비·사무실운영비·감가상각비·인증심의 등 인증단체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인증단체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으로 정한 금액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 출장기간은 공장심사 또는 제품심사에 필요한 일수와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2명으로 산정한다.
다. 인증심사원 수당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사업 부문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만원 단위 미만 절사)의 80 % 이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 수당산정의 기간은 심사에 필요한 일수로 하고, 최초 심사 및 정기심사는 공장심사비의 산정 인원은 2명으로 하고 정기심사 주기내의 제품심사는 산정 인원을 1명으로 한다. 다만,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이동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동에 필요한 일수의 2분의1을 수당으로 추가할 수 있다.
라. 제품시험 수수료	○ 제품시험에 대한 기본료·인건비·재료비·감가상각비·시설유지비 등 시험·검사를 위한 실비로서 인증단체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으로 정한 금액 다만, 제13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제품시험·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계약 금액
마. 시료운반·조작비	○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

2. 세부내역(부가세 별도)

가. 기본 수수료

구분	신규인증	정기심사(공장)	정기심사(제품)	특별공장이전심사	확인심사	종류추가
신청비	300,000	200,000	100,000	200,000	200,000	100,000

- 우수 단체표준 제품심사의 신청은 정기심사(제품)의 기준 적용

나. 품목별 수수료

품목수	1	2	3	4	5
수수료	0	150,000	300,000	450,000	600,000

다. 인증심사원 출장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실비	식 비 (1일당)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	20,000

비고 1. 교통비의 증빙은 영수증에 기반한다.

2. 자동차 운임 실비계산

당일	조합→심사대상 공장→조합거리 비 갈강	×출발지 평균유가 원	왕복통행료 원
2일 이상	1일차 조합→심사대상 공장→숙박지 연비 갈강	×출발지 평균유가 원	편도통행료 원
	2일차 숙박지→심사대상 공장→숙박지 연비 갈강	×출발지 평균유가 원	편도통행료 원
	3일차 숙박지→심사대상 공장→조합 연비 갈강	×출발지 평균유가 원	편도통행료 원

3. 거리측정 및 통행료는 네이버 지도기준
4. 외부 심사원의 경우 소속기관에서 심사대상 공장까지의 거리
5. 출발지 평균유가는 한국석유공사 오피넷(<http://www.opinet.co.kr>) 기준
6. 같은 기관에서 심사원 2명이 편성되는 경우 교통비는 1인에게만 지급
7. 심사대상 공장이 여러 곳일 경우 총 출장비를 균등 분할한다.

라. 인증심사원 심사수당

- 1man · day 기준 : 210,000원

마. 제품 시험 수수료

- 조합과 위탁을 맺은 시험검사기관의 수수료 규정을 따른다.
- 심사대상 업체에서 직접 시험검사기관으로 시험검사수수료 지급

품 질 방 침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은 신뢰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고객께 경쟁력 있는 인증 및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경영성과 개선 및 석회산업의 신뢰성과 발전에 기여한다.”

품 질 목 표

1. 업무규정과 계획을 준수하며 요구되는 납기에 인증 및 서비스를 정확 하게 수행한다.
2. 조합의 인증기관 유지에 필요한 법적 요구사항과 요건을 충족시킨다.
3. 프로세스 품질확보 및 지속적 개선을 통해 고객의 불만을 예방한다.
4. 고객불만을 개선의 기회로 대응한다.
5. 교육훈련을 통해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품격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6. 디지털 심사체계로서 기술정보 축적 및 제공 체계를 확보한다.

품질책임자는 이 품질방침 및 목표가 모든 계층에서 이해되고 시행되며 유지되도록 관련 자원의 지원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이 단체표준 인증시스템에 관하여 고객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20 . .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전무이사 ○○○○

공 평 성 선 언 문

조합에서 인증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과 심사원은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또한 이해상충을 배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인증관련 모든 업무에서 이해상충을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에 임한다.
2. 인증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관련하여 관련된 어떠한 사람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이사장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 및 이해상충, 중립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이를 사전에 보고하고 해당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위 사항들을 항상 준수하며 철저히 수행한다.

20 . . .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전무이사 ○○○○

[별표 8]

단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의 내용·시간·주기

(제46조 관련)

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과 정	내 용	시 간	
		양성교육	정기교육 (기간)
경영간부	1) 단체표준화제도와 정책방향 2) 단체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전략 3) 단체표준 인증제도의 최근 동향 및 쟁점 4)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 기법 사례 5) 단체표준화와 품질경영 추진을 위한 경영간부의 역할 6) 표준화 관계 법규 및 국가표준 시책 7) 그 밖에 단체표준화의 촉진과 품질경영 혁신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6시간 (3년)
품질관리 담당자	1) 산업표준화법령 및 하위규정 2) 단체표준화와 품질경영의 개요 3) 통계적인 품질관리기법 4)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실시 5) 단체표준 인증제도 및 사후관리 실무 6) 품질관리담당자의 역할 7) 그 밖에 산업표준화의 촉진과 품질경영 혁신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0시간	16시간 (3년)
단체표준 담당자	1) 산업표준화법령 및 하위규정 2) 단체표준 발굴 및 관리 3) 단체표준의 적부확인 4) 그 밖에 산업표준화의 촉진과 품질경영 혁신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7시간 (1년)
인증관리 담당자	1) 산업표준화법령 및 하위규정 2) 단체표준화와 품질경영의 개요 3) 인증심사기준 제정 및 인증심사 기법 4)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실시 5) 단체표준 인증제도 및 사후관리 실무 6) 인증심사 향상 및 개선방안 7) 그 밖에 산업표준화의 촉진과 품질경영 혁신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7시간 (1년)

승 낙 서

본인은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에 의거
단체표준 ○○위원회 위원 위촉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이 력 사 항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현 주 소			
자 택 전 화		Mobile phone (e-mail)	
소 속			
직 장 주 소			
직 장 전 화		직장 FAX	
년 월 년 월	학 력 사 항		
년 월 년 월	경 력 사 항		

서 약 서

본인은 단체표준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

- 다 음 -

1. 관련법규의 준수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위원(심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2. 심사 대상기관과의 어떠한 상업적 이해관계나 기타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다.
3.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이 심사 대상기관의 평가,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한다.
4.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이해관계자 및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의 동의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년 월 일

- 소 속 :

- 생 년 월 일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위 축 장

성 명 :

소 속 :

귀하를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하여 단체표준 및 인증업무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체표준(심사, 인증, 공정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0 년 월 일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직인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등록 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⑤ 근무처		⑥ 직 위	
	⑦ 근무처 소재지		⑧ 근무처 전화번호	
⑨ 소지 자격증		(자격증 번호 :)		
		(자격증 번호 :)		
		(자격증 번호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12조 2항에 따라 인증 심사원 등록 및 심사원증의 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2.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12조 1항에서 정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1부.
3. 증명사진 2장
4.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p>단체표준인증심사원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50px; height: 100px; margin: 20px auto;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사진</div> <p>홍길동</p> <p>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p>	<p>단체표준인증심사원증</p> <p>소 속 :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성 명 : 홍길동 생년월일 : 년 월 일</p> <p>위 사람은 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 제12조 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유효기간 : 20 ~ 20</p> <p>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p>
--	--

앞면

뒷면

단체표준 제정(개정·폐지) 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기관명 또는 단체명		④ 전화번호	
	⑤ 주소			
⑥ 표 준 명		⑦ 표준 번호		
<p>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8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표준의 제정(개정·폐지)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 200px;">신 청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 0 20px;">(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top: 20px;">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p>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체표준안 2. 단체표준안에 대한 설명서 3. 참고문헌 및 자료 <p>※ 개인 경우에는 ①란 및 ②란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p> <p>※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①란 및 ②란을 적지 않습니다.</p> <p>※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을 적지 않습니다.</p> <p>※ 제정 신청인 경우에는 ⑦란을 적지 않습니다.</p>				

B 중복성		예	아니오	
1.	단체표준안과 중복 KS 확인	● 단체표준안과 명칭 또는 적용범위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KS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단체표준안과 중복 단체표준 확인	● 단체표준안과 명칭 또는 적용범위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단체표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중복성 검토 핵심단어 (key word)	※ 중복유사 KS와 단체표준 및 기술기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e나라 표준인증”(http://e-ks.kr), “단체 표준종합정보센터”(http://sps.kssn.net) 등에서 검색한 핵심 단어(key word)를 기재하십시오(5개 이상 권고)		
4.	중복 KS 또는 단체표준	※ 위의 중복성 검토 결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KS 또는 단체표준이 있는 경우, 해당 KS 또는 단체표준의 번호와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5.	기존 KS 및 단체표준과의 차별성	※ 유사하거나 동일한 KS 또는 단체표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차별성 및 근거, 통폐합 필요성 등에 대하여 기재하십시오. 대비표 등을 반드시 첨부하십시오.		

C 정부정책 관련성		예	아니오	
1.	정부 활용성	● 기술기준 또는 공공 조달기준 등에 활용이 예상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예’ 인 경우, 부처기술기준 및 공공조달 분야를 아래의 항목에서 선택하고 (복수선택가능), 해당 부처 기술기준 또는 공공조달기준과 관련한 내용을 아래에 기재하십시오. <input type="checkbox"/> 환경, 보건, 안전, 위생 등 기술기준에 활용가능한 표준 <input type="checkbox"/> 공공 조달제품의 품질기준/규격(specification)으로 활용가능한 표준 <input type="checkbox"/> 기타 ()		
2.	정부 정책 연계성	● 주요 표준화 정책 또는 정부 R&D사업결과 등을 반영한 표준인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예’ 인 경우, 정부의 표준화 정책 또는 중점 연구개발 사업 분야를 아래의 항목에서 선택하고 (복수선택가능), 해당 항목과 관련한 내용을 아래에 기재하십시오. <input type="checkbox"/> 국가표준기본계획, 국민행복표준화계획 등 정부 표준화 정책 <input type="checkbox"/>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표준기술력향상사업 등 정부 R&D결과물 반영 <input type="checkbox"/> 산업융합원천기술-표준화 연계로드맵 등 정부 표준화 기술 전략 로드맵 <input type="checkbox"/> 기타 ()		

3.	공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산업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등 범용적인 분야에 활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인 경우, 기초산업 인프라 조성 및 공공서비스 등 범용적 분야에 활용되는지 아래의 항목에서 선택하고 (복수선택가능), 해당 항목과 관련한 내용을 아래에 기재하십시오. <input type="checkbox"/> 광범위한 생산자 등이 활용 가능한 범용 부품 및 인프라에 관한 표준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노약자, 장애인)용품, 사회안전·보안 및 공공서비스 인프라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되는 표준 <input type="checkbox"/> 기타 () 		

D	산업계 관련성	예	아니오
---	---------	---	-----

1.	산업계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계의 수요/니즈를 파악하여 개발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인 경우, 표준의 수요/니즈가 있는 산업/업종에 대하여 기재하십시오. 		
2.	산업계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을 개발할 때 관련 산업계가 참여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인 경우, 표준을 개발할 때 참여한 기업 또는 산업 단체에 대하여 기재하십시오. 		
3.	산업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계의 활용이 예상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인 경우, 표준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활동(예: 제품 설계/개발, 구매, 생산, 품질관리, 물류 등)에 대하여 기재하십시오. 		

E	표준서식 일관성	예	아니오
---	----------	---	-----

1.	단체표준안의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표준안의 서식을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맞추어 작성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KS 안의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표준안을 작성할 때 KSDT (표준서 작성 Software)를 사용하여 맞추어 작성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서식 불일치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안의 서식이 KS A 0001 을 따르지 않는 경우, 서식을 달리한 이유를 기재하십시오. 		

작성자	소속/직책	성명 및 서명	작성일자

심 의 의 려 서			
심의안건	표준명		표준번호
	제정일자	년 월 일	
	최종개정. 확인일자	년 월 일	
첨 부 서 류		1. 단체표준(안) 2. 참고자료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위와 같이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7조에 따라 심사 의뢰합니다.			
년 월 일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인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회 의 록

결	담당	간사	위원장	이사장
재				

1. 회 의 명			
2. 장 소			
3. 일 시			
4. 참 석 자			
간사		작 성 자	(인)

심의완료 통지서

수 신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참 조 ○○○○○○

심의안건	표 준 명		표준번호	
	심 사 구 분	제정, 개정, 확인, 폐지		
심 의 일 자				
첨 부 서 류		1. 단체표준(안) 2. 회의록		

위와 같이 심사 완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항 목	점검 기준	평가		비고
		예	아니오	평가의 근거 등
1. 심사위원회구성 및 인증단체의 요건 등				
1-1 단체표준의 제정·개정·확인·폐지 및 단체표준 인증 심사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 여부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심사위원회 결과보고서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적부확인 여부 - 3년마다 적부 확인여부 및 절차(심사위원회 개최)	단체표준리스트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심사위원회 개최 여부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심사위원회 구성은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자기인증 등)	심사위원회 위원 중 단체표준 인증단체 소속 인원 포함 여부 확인 ※ 주요 이해관계자(시험기관, 구매기업, 소비자, 표준전문가, 학계 등)가 포함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단체에 소속된 인증심사원 1인 이상 보유 여부	인증심사원 등록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시험·검사할 수 있는 설비 보유 여부 - 미보유시 심사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여부 - 시험설비를 단체가 직접 운용할 경우 제품검사원 확보여부	시험·검사설비 목록 또는 공인 시험기관과의 업무협약서 ※ 위탁기관이 KOLAS 인정을 받은 기관인지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				
○ 업무 규정 포함 사항	2-1 품질방침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에 요령 제14조 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 ※ 조직도상 품질책임자 표시 및 품질책임자 임명 확인 ※ 제품심사를 위한 시료 “샘플링”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2-2 조직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2-3 직원 및 심사원의 적격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2-4.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항 목		점검 기준	평가		비고
2. 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			예	아니오	평가의 근거 등
○ 업무 규정 포함 사항	2-5 단체표준의 인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처분기준(예: 인증 취소, 인 증효력 정지, 시정조치 후 특 별심사 실시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인증표시가 규칙에 따르는 지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6 단체표준인증 표시 제품의 사후관리 및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7 시험·검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8. 이의 및 불만 처리 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9 인증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10 우수 단체표준제 품 확인서 및 단체표 준 인증표시 도표의 사용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11 KS가 단체표준으 로 전환되었을 때 지 위 승계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단체표준인증심사					
3-1 소속심사원을 포함한 심사 반 구성 및 통보 등 절차	소속심사원 1인 포함, 2인 이상의 심사반 구성여부, 일 정 및 심사원 명단 통보 여 부 등 인증실태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2 인증심사원은 산업표준화 법 26조에 적합한자로 단체 표준인증단체에 등록 여부	심사원 자격확인 및 심사원 등록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3 인증심사원은 직무교육으 로 3년 내에 20시간 이상 이 수 여부 (한국표준협회에서 개최하는 심사원 교육 등)	심사원 교육현황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의 사후관리					
4-1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에 대하여 공장심사 및 제품심 사 실시여부 (공장심사는 매 3년마다, 제품심사는 매 2년 마다)	공장심사(3년) 및 제품심사 (2년) 현황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항 목	점검 기준	평가		비고
4.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의 사후관리		예	아니오	평가의 근거 등
4.2 사후관리 실시결과 단체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단체표준인증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 등의 조치 여부	사후관리 조치 사항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3 단체표준인증을 한 제품이 그 단체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품의 수리·교환 또는 보상이 되도록 하는 조치 여부	민원발생시 조치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4 단체표준표시제품이 단체표준에 맞지 않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 생산공장에 대하여 특별 사후관리 등의 조치 여부	특별사후관리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자체점검 [요령 제17조]				
5-1 단체표준인증심사사후관리업무의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자체점검 실시 여부	연 1회 이상 자체점검 실시 현황 확인 ※ 내부심사 결과를 책임경영자에게 보고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보고 [요령 제21조] 등				
6-1 법적 지위/조직/경영진/소재지 등 변경시 보고 여부	보고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2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업무휴지 및 폐지시 신고서 제출	업무휴지 및 폐지시 신고서 제출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별지 제13호 서식]

자 체 점 검 보 고 서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심사범위 :		보고서번호			
		체크리스트			
심사기준 :		심사일자			
		심사부서			
심사팀장	(인)	심 사 원	(인)		
심사내용요약					
지적사항내용					
권고사항					
경영자검토					

공장심사 보고서

(□적부제 ■점수제)

1. 공장심사 현황		접수번호						
회사명(공장)		대 표 자						
소재지								
표준번호(표준명)		제품명(모델명)						
제품분류		생산방식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 때 일						
신청일자		심사일자						
심사결과 요약								
심 사 결 과	심사사항	전체 평가항목 수 (핵심품질)	적합 평가항목 수 (핵심품질)	부적합 평가항목 수 (핵심품질)	배점	점수	종합 점수	종합판정
	1. 품질경영	5(1)			15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면제 <input type="checkbox"/> 합격 <input type="checkbox"/> 불합격
	2. 자재관리	6(1)			17.5			
	3. 공정·제조설비 관리	8(1)			22.5			
	4. 제품 관리	6(2)			20			
	5. 시험·검사설비 관리	3(1)			10			
	6.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관리	5(1)			15			
	계	33(7)			100			
* 개선조치 평가항목 및 확인심사 평가항목 : 공장심사 평가항목 중 ★표시된 핵심품질은 확인심사 평가항목이고, 그 외의 것은 일반품질로 개선조치 평가항목이다.								
위와 같이 공장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div style="width: 45%;"> 인증기관 :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인증기관 :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div> <div style="width: 45%;"> 인증심사원 성명 (인/서명) 인증심사원 성명 (인/서명) </div> </div>								

- 비고 1** 적용근거 및 특례 : 본 공장심사보고서의 평가항목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8(인증심사기준)을 기반으로 작성한다. 단, 인증 품목별 특성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에 심사사항 및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 이에 따라 심사사항 및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 비고 2** 핵심품질은 모두 만족 시 적합이며, 판정 점수는 핵심품질은 5점, 일반품질은 2.5점으로 한다.
- 비고 3** 종합 판정은 80점 이상 “합격”, 60점 이상~80미만 “보완”, 60점 미만 “불합격” 으로 구분한다. 면제 판정은 업무규정 제21조(공장심사 일부면제 등)에 따른다.

2. 공장의 일반현황

○ 종업원(C) 현황

총인원(합계)	사무직	기술직	생산직	기타
(외국인 명 포함)				

○ 공통 생산현황

총 자 본 금	백만원	공장 판매실적(A)(연)	백만원
경 상 이 익(B)(연)	백만원	1인당 매출액(A/C)	백만원
1인당 부가가치액(B/C)	백만원	연구개발 투자비 (연구개발비/A)	%
기 타 생 산 품		기타 인증 수	의무 ()개 임의 ()개
회 사 연 혁			
특 기 사 항	○ 공장심사 참석자		

○ 품목별 생산현황

표준번호				
생 산 능 력(연)	톤	톤	톤	톤
생 산 실 적(연)	톤	톤	톤	톤
판 매 실 적(연)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 출 실 적(연)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인증제품 생산계획(연)	톤	톤	톤	톤
소 요 원 자 재	톤	톤	톤	톤

3. 공장심사 평가항목

1. 품질경영 : 일반품질(4항목), 핵심품질(1항목) ※ ISO 9001 인증기업은 품질경영 관리 평가항목(1.1~1.5) 모두 적합(예)으로 평가	적합여부		점수
1.1 경영책임자가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사 전체 차원의 활동을 위하여 조직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는가? (2.5점) * 비교 ● 경영책임자 : 인사권, 예산집행권, 자원의 폐기결정권을 갖고 있는 공장(회사)의 최고위자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2 [★ 핵심품질] 단체표준 최신본을 토대로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을 제·개정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사내표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가? (5점) * 비교 : 사내표준 구축 및 품질경영, 제품·중간·인수검사 표준, 시험표준, 설비관리, 작업장 환경,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KS 및 단체표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3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매년 자체점검(내부심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준화 및 품질경영 관리에 반영하고 있는가? (2.5점) * 비교 ● 자체점검 주기(내부심사 등, 년 1회 이상) ● 품질경영 계획은 품질방침 및 측정 가능한 품질목표의 등 포함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4 품질경영 부서(또는 품질관리담당자)의 업무내용과 책임·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서(또는 품질관리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2.5점) * 비교 : 종업원 1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품질관리담당자 독립적 운영 시 적합(예)으로 평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5 제안 활동 또는 소집단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2.5점) * 비교 : 제안 활동 및 소집단 활동(학습조직, TFT, 분임조 등)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자재관리 : 일반품질(5항목), 핵심품질(1항목)	적합여부		점수
2.1 [★ 핵심품질] 주요 자재관리(주요 원자재, 부자재 등) 목록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심사전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 받았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에 지속적으로 승인을 받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5점)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2 자재에 대한 품질항목과 품질기준을 제품 특성에 맞게 한국산업표준을 활용하여 단체표준 인증제품 생산에 적합하도록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2.5점)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3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자재에 대한 인수검사 규정 내용이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가? (2.5점) * 비교: •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해 자재별로 로트의 크기, 시료 채취방법, 샘플링 검사방식 및 조건, 시료 및 자재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격 로트의 처리방법, 품질항목별 시험 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 외부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시험의뢰를 할 경우 시험의뢰 주기, 시험 의뢰 내용(시험항목) 등을 규정 • 자재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 활용 시 입고되는 자재와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자재와의 로트 일치성 확인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4 인수검사를 자체에서 수행할 경우, 검사능력을 보유한 검사자가 인수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합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가? (2.5점) * 비교: • 인수검사를 자체에서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자재를 적합한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 적합(예)으로 평가 • 검사능력 : 검사표준 준수여부(시료 채취, 시험절차, 판정), 시험·검사 설비 조작, 시험숙련도, 관련 계산식 활용, 응급처치 능력 등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5 자재 인수검사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결과(외부 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 포함)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2.5점)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6 인수검사 결과를 분석, 활용하고 있는가? (2.5점) * 비교 : 일정주기를 정하여 합격률, 사용 중 자재 부적합(품)률, 제품품질과 직접관련 품질특성치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재 공급업체의 변경 또는 제조공정, 제품설계, 작업방법 변경 등에 대한 후속조치의 실행 등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 공정·제조설비 관리 : 일반품질(7항목), 핵심품질(1항목) ※ 외주공정이 있는 경우 공장심사 시 외주가공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적합여부	점수
3.1 공정별 관리항목과 항목별 관리사항들을 사내표준에 규정·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주요 제조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2.5점) *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방법, 관리주기, 관리기준, 관리결과의 해석, 관리데이터의 활용방법 등 각 공정별 관리규정을 단체표준에서 정하거나 제품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항목을 사내표준에 규정 • 공정을 외주하여 보유하지 않은 제조설비가 있는 경우, 외주공정·업체 선정기준, 관리방법을 규정한 사내표준 보유 및 준수 여부(보유 : 소유 또는 배타적 사용이 보장된 임차)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2 공정별 중간검사에 대한 검사항목과 항목별 검사 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2.5점)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3 주요 공정관리(자체공정 및 외주공정 포함) 항목에 대하여 공정능력지수를 파악하고 공정 및 제품품질 관리에 활용하고 있는가? (2.5점) * 비교 : 주요 공정관리 항목에 대한 공정능력지수를 파악할 수 없는 공정은 적합(예)으로 평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4 [★ 핵심품질] 공정별 작업표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현장작업자가 작업표준을 이해하며 표준대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5점) *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표준에는 작업내용, 작업방법, 이상발생시 조치사항, 작업교대 시 인수인계 사항 등을 규정하고 실제작업 내용과 일치 여부 •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을 할 경우 작업표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그림 등 활용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5 부적합품은 적절한 식별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정 부적합에 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고 있는가? (2.5점) * 비교 : 유형별 부적합 건본 보유 및 관리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이를 확인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6 사내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별로 설비배치 상태가 합리적인가? (2.5점) *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설비 : 제품생산이 가능한 성능과 제원 및 용량을 구비 • 공정관리 사내표준에서 외주가공에 대하여 적합하게 규정·관리하고 있는 제조설비는 보유하지 않아도 좋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7 설비의 운전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설비별 운전 표준에 따라 설비를 적정하게 운전하고 있으며, 설비의 이력·제원, 수리 및 부품 교환 내역 등을 기록한 설비 관리대장(또는 이력카드)을 관리하고 있는가? (2.5점) * 비교 : 정밀도 유지가 필요한 측정설비는 적정하게 교정하여야 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8 설비의 예방보전을 위해 설비운할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설비관리 능력 및 전문지식을 보유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할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점검,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 (2.5점) *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의 원활한 운전을 위하여 각 설비별, 부위별로 적정 운할유의 선택기준, 운할유의 양, 운할주기, 폐운할유 처리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하여 실시(설비관리 규정에 포함 관리 가능) • 설비운할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적합(예)으로 평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제품관리 : 일반품질(4항목), 핵심품질(2항목)	적합여부		점수
4.1 제품의 설계 및 개발절차, 해당제품의 품질항목과 기준을 단체표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2.5점)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비교 : 제품의 설계 및 개발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그 외의 제품은 해당제품의 품질항목과 기준을 단체표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적합(예)으로 평가			
4.2 로트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제품검사 내용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2.5점)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비교 • 로트 품질 보증 규정 : 로트의 구성 및 크기, 시료 채취방법, 샘플링 검사 방식 및 조건, 시료 및 로트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격로트의 처리 방법 등 • 공인시험·검사기관 성적서를 활용하거나 계약에 의해 외부설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시험검사 주기는 설비를 보유한 업체가 실시하는 주기와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주기가 심사기준에 명시된 경우는 심사기준의 주기를 따른다.)			
4.3 제품시험은 제품품질 항목별로 단체표준과 사내표준에 규정한 기준과 절차·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고, 검사 후 합격·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품질미달 제품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는가? (2.5점)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비교 : 외부 공인시험·검사기관 의뢰 항목의 성적서는 검사방법에서 정한 주기(횟수)에 일치되는 수만큼 보유하여야 한다.			
4.4 [★ 핵심품질] 제품검사 담당자가 자체에서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5점)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비교 • 검사능력 : 검사표준 준수여부(시료 채취, 시험절차, 판정), 시험·검사 설비 조작, 시험숙련도, 관련 계산식 활용, 응급처치 능력 등 • 자체설비가 없는 경우 외부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4.5 [★ 핵심품질] 과거 자체적으로 시행한 품질검사 결과의 값과 비교하여 사내표준에서 정한 허용 값 한계 내에 있는가? (5점)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비교 • 품질검사 결과 과거 적용기간 : 인증심사 3개월, 정기심사 12개월,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심사 3개월 • 시험결과가 평균값을 산출할 수 없는 제품은 적합(예)으로 평가함. • 현장 입회시험이 어려운 중요 품질항목은 시료 채취 후 제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4.6 제품검사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품품질 및 품질시스템 개선에 반영, 활용하고 있는가? (2.5점)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비교 : 데이터 분석(일정주기를 정하여 평균 값, 표준편차, 불량률 등의 분석 여부)			

5. 시험·검사설비관리: 일반품질(2항목), 핵심품질(1항목) ※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 공장심사 시 해당 외부설비 업체에 대한 현장확인 인을 실시할 수 있음	적합여부	점수	
<p>5.1 [★ 핵심품질] 단체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 품질항목에 대한 시험·검사가 가능한 설비를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유하고 있는가? (5점)</p> <p>* 비고 : 시험·검사 설비를 외주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기관(업체 포함)과의 사용 계약 또는 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를 활용하는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 내용, 시험검사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시 • 시험검사 의뢰는 해당설비로 실시하는 인수검사, 공정검사, 제품검사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실시 • 시험검사 의뢰주기는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한 업체가 실시하는 수준과 동일한 횟수로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성적서를 보유 • 시험검사 주기를 단체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주기를 따름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p>5.2 시험·검사 설비의 설치장소 및 환경이 적정하고, 성능 유지를 위해 각 설비의 관리항목을 규정,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여 설비 관리에 활용하고 있는가? (2.5점)</p> <p>* 비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온도, 습도, 조명, 전기, 수도시설 등), 시험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의 확보 여부 • 설비관리항목(점검항목·점검 주기·점검방법 등)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p>5.3 시험·검사설비의 측정표준 소급성(정밀·정확도 유지)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대상설비, 주기 등)하고 교정주기에 따라 외부 공인기관의 교정 후 교정성적서를 관리하고 있으며 교정결과를 측정에 반영 활용하고 있는가? (2.5점)</p> <p>* 비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해 교정주기를 정하고 교정성적서 또는 표준물질인증서를 체계적으로 관리 • 교정 또는 표준물질인증서의 성적내용(불확도 또는 보정값)을 측정에 반영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 • 화학 분석 장비의 경우 인증표준물질과 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함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소비자, 환경·자원관리: 일반품질(4항목), 핵심품질(1항목)	적합여부		점수
6.1 [★ 핵심품질] 소비자불만 처리 및 피해보상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불만 제품 로트를 추적,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있는가? (5점)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비교 • KS Q ISO 10002(고객만족 - 조직의 불만처리에 대한 지침) 등을 토대로 사내표준에 규정 • 해외 인증업체는 한국 내 판매업체가 소비자불만 처리 업무를 수행 • 원자재의 입고 일자 및 인수검사 결과, 제조 일시 및 사용설비,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제품검사, 출고일시, 판매장소 등 확인			
6.2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구매정보(규격, 사용법, 시공방법, 설명서 등) 및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인증 표시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적정하게 제공·표시하고 있는가? (2.5점)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비교 • KS A ISO/IEC Guide 14(소비자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 정보에 대한 지침) 및 KS A ISO/IEC Guide 37(소비자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대한 지침) 등을 토대로 사내표준에 규정 • 제품사용 설명서 또는 시공방법 설명서 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단체표준별 인증심사 기준의 표시사항을 제품 및 포장에 표시			
6.3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 및 종업원 안전, 보건, 복지를 고려한 청정 작업환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2.5점)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비교 • 안전·보건 : 전기·기계 안전요건, 종업원의 안전장비 보급, 안전관리 교육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 작업장 환경관리(대상, 범위, 기준, 주기, 평가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6.4 사내표준에 따라 임직원의 사내·외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품질경영 부서의 팀장급 이상 경영간부가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하였는가? (2.5점)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비교 • KS Q 10015를 토대로 규정 • 계획 : 연간 계층별·분야별(자재·공정·제품품질·설비관리·제품생산기술 등) 실시 : 최근 3년간 실적 확인 •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교육(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2) • 경영간부의 30 % 이상 교육이수 및 미이수 경영간부에 전파교육 완료시 적합(예)으로 평가			
6.5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담당자가 3개월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직무에 필요한 지식의 보유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2.5점)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비교 • 전임자의 근무경력을 포함하되, 업무 공백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만 인정 • 품질관리담당자 자격 및 직무에 필요한 지식(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2 및 시행규칙 별표 8)			

4. 자재관리 목록표

번호	자재명	용도	규격(Spec.)	공급업체	생산국가	변경사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위와 같이 자재관리 목록을 확인하였음.

※ 비료의 경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에 따른 비료의 제조 원료장부로
같음한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회자(대표자, 품질관리담당자 등)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5. 시료채취 내역 및 제품 품질시험 의뢰 현황

가. 시료채취 내역

표준번호	표준명	제품명 (모델명)	재고량	시료크기	시료수 (로트번호)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나. 샘플링(시료 채취) 방식 :

다. 공시체 제작방법(해당하는 경우)

- 공시체 제작방법 :
- 공시체 규격 :
- 제작자 :

라. 시험의뢰처(시험기관) :

위와 같이 시료채취 및 시험 의뢰하였음.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회자(대표자, 품질관리담당자 등)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6. 보완 / 부적합 보고서

(보완 <input type="checkbox"/> /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보고서				
회사명 (공장명)			소재지	
표준번호 (표준명)			제품명 (모델명)	
심사일자			조치기한	
평가항목 번호	보완/부적합 구분		보완/부적합내용	담당 심사원
	일반 품질	핵심 품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완/ 부적합 수	합계		개선조치 평가항목 (일반품질)	확인심사 평가항목 (핵심품질)
기타 개선 권고사항				

비고 : 공장심사보고서의 보완/부적합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보완/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증심사원

입회자(대표자, 품질관리담당자 등)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7. 보완 /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보완 <input type="checkbox"/> /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개선조치 보고서				
회사명 (공장명)			소재지	
표준번호 (표준명)			제품명 (모델명)	
심사일자				
담당자 성명		휴대폰		e-mail
평가항목 번호	보완/부적합 구분		보완/부적합 개선조치 요약 및 첨부문서 번호	담당심사원
	일반 품질	핵심 품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완/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공장)명		대표자		(인/서명)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 보완/부적합 항목의 개선조치 계획에 대한 세부 자료는 별첨 한다.				

보완 / 부적합 개선조치 검토 결과			
보완/부적합 대책 검토 종합의견			
종합판정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인증심사원	(인/서명)

제품심사 보고서

(□적부제 ■점수제)

1. 제품심사 현황		접수번호			
회사명(공장)		대 표 자			
소재지					
표준번호(표준명)		제품명(모델명)			
제품분류		생산방식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E-mail			
신청일자		심사일자			
심사결과 요약					
심 사 결 과	심사사항	심사사항 상세	점수	종합 점수	종합판정
	1. 품질경영교육	경영책임자 및 경영간부가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교육을 받았으며, 종업원에 대한 사내의 교육훈련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는가? (15점)	상 15		
			중 7		
			하 0		
	2. 품질관리담당자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8조에서 규정한 품질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독립적이며 적절하게 표준화 및 품질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15점)	상 15		
			중 7		
			하 0		
	3. 제품의 품질관리	[★ 핵심품질] 제품의 품질을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25점)	상 25		
			중 12		
			하 0		
	4. 제조설비의 관리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일상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15점)	상 15		
			중 7		
			하 0		
	5. 시험·검사설비 관리	표준별 시험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외부 기관(업체 포함)과의 사용 계약 또는 외부 공인시험성적서 활용이 허용된 설비에 대하여 사용 계약 또는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활용하는가? (15점)	상 15		
			중 7		
			하 0		
	6. 표시사항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는가? (15점)	상 15		
			중 7		
하 0					
* 개선조치 평가항목 및 확인심사 평가항목 : 제품심사 평가항목 중 ★표시된 핵심품질은 확인심사 평가항목이고, 그 외의 것은 일반품질로 개선조치 평가항목이다.					
위와 같이 공장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 :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인증심사원	성명	(인/서명)	

2. 공장의 일반현황

○ 종업원(C) 현황

총인원(합계)	사무직	기술직	생산직	기타
(외국인 명 포함)				

○ 공통 생산현황

총 자 본 금	백만원	공장 판매실적(A)(연)	백만원
경 상 이 익(B)(연)	백만원	1인당 매출액(A/C)	백만원
1인당 부가가치액(B/C)	백만원	연구개발 투자비 (연구개발비/A)	%
기 타 생 산 품		기타 인증 수	의무 ()개 임의 ()개
회 사 연 혁			
특 기 사 항	○ 제품심사 참석자		

○ 품목별 생산현황

표준번호				
생 산 능 력(연)	톤	톤	톤	톤
생 산 실 적(연)	톤	톤	톤	톤
판 매 실 적(연)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 출 실 적(연)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인증제품 생산계획(연)	톤	톤	톤	톤
소 요 원 자 재	톤	톤	톤	톤

3. 자재관리 목록표

번호	자재명	용도	규격(Spec.)	공급업체	생산국가	변경사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위와 같이 자재관리 목록을 확인하였음.

※ 비료의 경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에 따른 비료의 제조 원료장부로
같음한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회자(대표자, 품질관리담당자 등)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4. 시료채취 내역 및 제품 품질시험 의뢰 현황

가. 시료채취 내역

표준번호	표준명	제품명 (모델명)	재고량	시료크기	시료수 (로트번호)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나. 샘플링(시료 채취) 방식 :

다. 공시체 제작방법(해당하는 경우)

- 공시체 제작방법 :
- 공시체 규격 :
- 제작자 :

라. 시험의뢰처(시험기관) :

위와 같이 시료채취 및 시험 의뢰하였음.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회자(대표자, 품질관리담당자 등)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5. 보완 / 부적합 보고서

(보완 <input type="checkbox"/> /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보고서				
회사명 (공장명)			소재지	
표준번호 (표준명)			제품명 (모델명)	
심사일자			조치기한	
평가항목 번호	보완/부적합 구분		보완/부적합내용	담당 심사원
	일반 품질	핵심 품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완/ 부적합 수	합계		개선조치 평가항목 (일반품질)	확인심사 평가항목 (핵심품질)
기타 개선 권고사항				

비고 : 제품심사보고서의 보완/부적합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보완/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증심사원

입회자(대표자, 품질관리담당자 등)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6. 보완 /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보완 <input type="checkbox"/> /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개선조치 보고서				
회사명 (공장명)			소재지	
표준번호 (표준명)			제품명 (모델명)	
심사일자				
담당자 성명		휴대폰		e-mail
평가항목 번호	보완/부적합 구분		보완/부적합 개선조치 요약 및 첨부문서 번호	담당심사원
	일반 품질	핵심 품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완/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공장)명		대표자		(인/서명)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 보완/부적합 항목의 개선조치 계획에 대한 세부 자료는 별첨 한다.				

보완 / 부적합 개선조치 검토 결과			
보완/부적합 대책 검토 종합의견			
종합판정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인증심사원	(인/서명)

단체표준 인증마크 사용에 관한 계약서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이하 “갑”이라 한다)와 ○○○ (이하“을”이라 한다)는 갑이 을에 대해 인증한 제품에 관련된 단체표준 인증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인증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인증품목)

업체명	품목명(모델명)	인증유효기간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인증의 취소되지 않는 한 제1조의 인증유효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정기심사 실시결과 인증이 연장 되었을 경우 인증유효기간 만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권리 및 의무)

- ① “을”은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인증 받은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 할 수 있다.
- ② “을”은 인증을 받고 있는 것을 광고 그 외의 방법(판매촉진용 인쇄물 등)으로 제3자에게 표시 또는 설명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인증을 받고 있지 않는 제품과 혼돈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 ③ “갑”은 인증에 관계되는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을”에 대하여 특별사후관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장 또는 기타 필요한 장소에 “갑”이 출입하여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 ④ 제3항에 의거하여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와 관련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수수료는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제38조(인증수수료 등)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4조 (단체표준 인증마크의 표시)

제품 인증을 받은 “을”은 해당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다음의 각 호 내용을 표시를 할 수 있다.

1. 단체표준의 명칭 및 번호
2. 단체표준에서 정하는 제품의 종류, 등급, 호칭
3. 단체표준 인증번호
4. 인증받은자의 판매처 및 제조처, 제조일
5. 인증기관명
6.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별표 3]의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제5조 (사용 조건 및 범위)

- ① “을”은 인증서를 발급 받은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체표준 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인증제품은 제품, 포장, 용기, 납품서 또는 보증서 등에 인증마크 등의 표시의 사용을 동의 한다. “을”은 인증제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해 인증서의 사본을 배 포함 수 있다.
- ③ “을”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 공장에서 생산된 인증제품에 한해서 단체표준인증마크를 사용할 수가 있다.
- ④ 기타 인증마크 표시에 대한 사항은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시험용 제품의 제공)

“갑”이 제품심사 등의 시험용 제품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이것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갑”은 시험 등에 의해 생긴 시험용의 제품 등의 해체 및 손상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제7조 (정기심사)

- ① “갑”은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제30조(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의 사후관리)에 의거하여 정기 심사를 실시한다.
- ② “을”은 인증만료일 3개월 전에 정기심사 신청서를 인증단체에 제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③ “갑”은 원칙적으로 “을”에게 사전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갑”은 “을”이 정기심사의 목적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사전에 “갑”에게 심사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 ④ 또한 “갑”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에 대하여 사 후관리를 할 수 있다.
 1. 불량 단체표준 제품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민원발생 우려 및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개선조치 결과 확인·증빙 서류가 거짓으로 우려되는 경우
- ⑤ “을”은 정기심사전 인증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⑥ “을”은 정기심사에 관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파생제품 등의 추가 또는 사업장 등의 변경의 조치)

인증제품에 관하여 변경사항 발생 시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

- ① “을”은 이미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한 파생모델을 추가하는 경우 파생모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조공장의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을”은 해당공장 변경 및 추가 신청 하여야 한다. “갑”은 해당 변경 부분에 관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

제9조 (관련법률, 단체표준, 단체표준별 인증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의 조치)

“갑”은 관련법률,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별 인증심사기준이 개정 등의 이유로 변경되었을 경우 “을”에게 통보해야하며 통지방식은 문서 또는 인터넷 등 열람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① “을”은 인증제품 표준이 개정된 때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 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을”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 내용의 검토 결과 개정된 표준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을”에 대해 사후관리를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 (인증 및 인증취소 공표 등)

① “갑”은 “을”의 제품이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정보를 “갑”의 홈페이지 등에 의해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공표의 기간은 본 인증 계약이 종료 할 때 까지로 한다.

② “갑”은 “을”의 제품이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제35조(처분)에 의거하여 인증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갑”의 홈페이지 등에 의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의신청 및 보상책임)

인증제품과 관련하여 소비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인증업체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KS Q ISO/IEC 17065 적합성평가-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을”에게 있다.

제12조 (지위의 승계)

“을”이 제3자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을”의 지위를 승계한다. 또한 “을”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신속하게 “갑”에게 지위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의 유지)

“갑”은 “을”의 인증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해 인증업무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을”의 승낙 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는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4조 (단체표준인증마크 등의 허위표시 시의 조치)

① “갑”은 “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에 대하여 해당 사항의 시정 및 예방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을”은 시정 및 예방조치를 완료한 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증 받은 자가 인증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 받은 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 표시를 한 경우
2. 인증 받은 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 받은 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인증 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을 그 제품, 포장, 용기, 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4. 인증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 등의 광고 이외에 해당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다고 오해되는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제15조 (단체표준 인증마크 등의 허위표시 시 시정 및 예방조치)

- ① “갑”은 “을”의 공장이 단체표준인증마크 등의 허위표시를 한 경우 “을”에 대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 하여야 한다.
- ② “갑”은 해당 시정 및 예방조치 요청 시 기한을 정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또, “갑”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갑”의 요청에 대하여 “을”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응하지 않았을 때, 기한(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조치를 완료한 취지의 보고가 “을”로부터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고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6조 (인증의 취소)

“갑”은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제36조(인증의 취소)에 의거하여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7조 (인증취소와 관련된 조치)

“갑”은 “을”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된 인증제품의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단체표준 인증마크 등의 표시를 제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 (인증에 관계되는 비용)

“을”이 “갑”에게 지불하는 인증 및 인증유지를 위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갑”이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한다.

제19조 (인증 계약의 해제)

인증기간 만료 또는 인증취소로 인증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이의 불이행에 따라 “갑” 및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을”은 법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제반 보상 및 사과문의 게재 등 “갑”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① “을”은 인증서를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인증마크”의 모든 표시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제품설명서, 홍보물 등 기 제작된 자료라 할지라도 여타의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면 “인증마크”를 제거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마크” 상품이라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여타의 표시 및 문구도 제거해야 한다.

제20조 (본 인증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서의 해석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 관례를 따르되, 해석상의 견해차가 있을 때는 “갑”과 “을”이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21조 (합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된 사무소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 (기타)

본 계약의 입증을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날인 후 1통씩을 보유 한다.

인증 계약 체결일 : 년 월 일

“갑”

회사명 :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대표자 : 이사장

“을“

회사명 :

(인)

대표자 :

(인)

단체표준제품인증서

인 증 번 호 : 제 2111-00 호

제 조 업 체 명 : (주)테스트용

사업자등록번호 : 205-82-00000

대 표 자 성 명 : 홍길동

공 장 소 재 지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로 256

인 증 유효 기 간 : 2021.01.01

인 증 제 품

-단체표준번호 : SPS-KLIC 001-0772

-단체표준명 : 석회질 비료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 생석회 비료 과립상, 석회고토 비료 과립상, 소석회 비료 분말상

산업표준화법 제 27 조 및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 심사를 실시한 결과 단체표준과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므로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단체표준 표시를 인증합니다.

2019 년 01 월 30 일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이사장



최초인증일 : 2019.01.02

최종변경일 : 2019.01.02

변경/재교부사유 :

[별지 제22호 서식]

단체표준인증 공장 관리기록부						코드번호	
회사 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전화/FAX		
		공장			전화/FAX		
	설립년월일	공장규모		대지: m ² / 건물 m ²			
	업체유형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상장여부	<input type="checkbox"/> 상 장 <input type="checkbox"/> 비상장		
	생산품목			기업연구소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종업원수	계	경영간부	기술직	사무직	기타	
	자본금(백만원)		매출액(백만원)		경상이익(백만원)		
인허가 상황	형식승인 취득일						
	ISO/KSA 9001 인증		인증기관			인증일	
	기타 제3자 인증		인증기관			인증일	
	기타						
제품생산량		전년도			금년예상		
인증품 목	인증번호		인증일자		단체표준명	단체표준 번호	
품질관 리 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재직일			
	휴대폰			E-mail			
	자격구분	<input type="checkbox"/> 품질경영 기사 <input type="checkbox"/> 품질경영 산업기사 <input type="checkbox"/>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자격증번호						
설비	제조·가공 설비 별첨						
	시험·검사 설비 별첨						
사후관 리현황	구분	년월일		심사위원		사후관리 결과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심사 보고서

(□적부제 ■점수제)

1. 제품심사 현황		접수번호				
회사명(공장)		대표자				
소재지						
표준번호(표준명)		제품명(모델명)				
제품분류		생산방식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E-mail				
신청일자		심사일자				
심사결과 요약						
심 사 결 과	심사사항	심사사항 상세	점수	종합 점수	종합판정	
	1. 품질경영교육	경영책임자 및 경영간부가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교육을 받았으며, 종업원에 대한 사내의 교육훈련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는가? (15점)	상 15			
			중 7			
			하 0			
	2. 품질관리담당자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8조에서 규정한 품질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독립적이며 적절하게 표준화 및 품질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15점)	상 15			
			중 7			
			하 0			
	3. 제품의 품질관리	[★ 핵심품질] 제품의 품질을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25점)	상 25			
			중 12			
			하 0			
	4. 제조설비의 관리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일상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15점)	상 15			
			중 7			
			하 0			
	5. 시험·검사설비 관리	표준별 시험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외부 기관(업체 포함)과의 사용 계약 또는 외부 공인시험성적서 활용이 허용된 설비에 대하여 사용 계약 또는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활용하는가? (15점)	상 15			
			중 7			
			하 0			
	6. 표시사항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는가? (15점)	상 15			
			중 7			
			하 0			
	* 개선조치 평가항목 및 확인심사 평가항목 : 제품심사 평가항목 중 ★표시된 핵심품질은 확인심사 평가항목이고, 그 외의 것은 일반품질로 개선조치 평가항목이다.					
	위와 같이 공장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 :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인증심사원	성명	(인/서명)	

2. 공장의 일반현황

○ 종업원(C) 현황

총인원(합계)	사무직	기술직	생산직	기타
(외국인 명 포함)				

○ 공통 생산현황

총 자 본 금	백만원	공장 판매실적(A)(연)	백만원
경 상 이 익(B)(연)	백만원	1인당 매출액(A/C)	백만원
1인당 부가가치액(B/C)	백만원	연구개발 투자비 (연구개발비/A)	%
기 타 생 산 품		기타 인증 수	의무 ()개 임의 ()개
회 사 연 혁			
특 기 사 항	○ 제품심사 참석자		

○ 품목별 생산현황

표준번호				
생 산 능 력(연)	톤	톤	톤	톤
생 산 실 적(연)	톤	톤	톤	톤
판 매 실 적(연)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 출 실 적(연)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인증제품 생산계획(연)	톤	톤	톤	톤
소 요 원 자 재	톤	톤	톤	톤

3. 자재관리 목록표

번호	자재명	용도	규격(Spec.)	공급업체	생산국가	변경사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위와 같이 자재관리 목록을 확인하였음.

※ 비료의 경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에 따른 비료의 제조 원료장부로
같음한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회자(대표자, 품질관리담당자 등)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4. 시료채취 내역 및 제품 품질시험 의뢰 현황

가. 시료채취 내역

표준번호	표준명	제품명 (모델명)	재고량	시료크기	시료수 (로트번호)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나. 샘플링(시료 채취) 방식 :

다. 공시체 제작방법(해당하는 경우)

- 공시체 제작방법 :
- 공시체 규격 :
- 제작자 :

라. 시험의뢰처(시험기관) :

위와 같이 시료채취 및 시험 의뢰하였음.

년 월 일

인증심사원

_____ (인/서명)

입회자(대표자, 품질관리담당자 등)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5. 보완 / 부적합 보고서

(보완 <input type="checkbox"/> /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보고서				
회사명 (공장명)			소재지	
표준번호 (표준명)			제품명 (모델명)	
심사일자			조치기한	
평가항목 번호	보완/부적합 구분		보완/부적합내용	담당 심사원
	일반 품질	핵심 품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완/ 부적합 수	합계		개선조치 평가항목 (일반품질)	확인심사 평가항목 (핵심품질)
기타 개선 권고사항				

비고 : 제품심사보고서의 보완/부적합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보완/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증심사원

입회자(대표자, 품질관리담당자 등)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6. 보완 /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보완 <input type="checkbox"/> /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개선조치 보고서				
회사명 (공장명)			소재지	
표준번호 (표준명)			제품명 (모델명)	
심사일자				
담당자 성명		휴대폰		e-mail
평가항목 번호	보완/부적합 구분		보완/부적합 개선조치 요약 및 첨부문서 번호	담당심사원
	일반 품질	핵심 품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완/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공장)명		대표자		(인/서명)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 보완/부적합 항목의 개선조치 계획에 대한 세부 자료는 별첨 한다.				

보완 / 부적합 개선조치 검토 결과			
보완/부적합 대책 검토 종합의견			
종합판정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인증심사원	(인/서명)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

확 인 번 호 : 제 2111-00 호
제 조 업 체 명 : (주)테스트용
사업자등록번호 : 205-82-00000
대 표 자 성 명 : 홍길동
공 장 소 재 지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로 256
인 증 유효 기 간 : 2021.01.01



인 증 제 품

- 단체표준번호 : SPS-KLIC 001-0772
- 단체표준명 : 석회질 비료
-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 생석회 비료 과립상, 석회고토 비료 과립상, 소석회 비료 분말상

「산업표준화법」 제 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8조 제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단체표준 제품임을 확인합니다.

2019 년 01 월 14 일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이사장



우수확인일 : 2019.01.03
변경/재교부사유 :

최초인증일 : 2019.01.02

최종변경일 : 2019.01.02

지위승계신고서				30
신 고 자	①업 체 명		③전화번호	
	②소 재 지			
	④대표자성명		⑤생년월일	
인증품목 또는 인증분야 (인증 받은 자인 경 우에만 기재)	⑥인증번호		⑦인증일자	년 월 일
	⑧표 준 명		⑨표준번호	
	⑩종류(등급)			
	⑪호 칭			
승계사항	승 계 전	승 계 후	승계연월일	
⑫ 업체명				
⑬ 대표자				
<p>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margin-top: 20px; text-align: right;">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top: 10px; text-align: center;">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p>				
	구 분	신고인 제출서류	비 고	
첨 부 서 류	인증받은 자의 지위승계 의 경우	1. 단체표준인증서(우수단체표준확인서)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의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의/불만 처리요청서

불만 및 이의 제기자			
기업명		성명	
전화		팩스	
E-mail		작성일자	
<p>■ 불만 및 이의제기 내용 (작성하실 때는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주십시오.)</p>			
<p>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p>			
<p>인증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불편함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며, 차후에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 이의 불만 처리 접수처 총괄 TEL. 02-2247-6551~3 / FAX. 02-2047-6554 / e-mail, admin@klime.org</p>			

단체표준 표시인증 제품 ()년도 생산실적보고서

1. 인증업체 현황

가. 회사개요

회 사 정 보	대표이사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		공장규모		대지(m ²)			건물(m ²)	
	분 사	회 사 명				TEL			FAX
		소 재 지		(-)					
	공 장	제조업체명				TEL			FAX
소 재 지		(-)							
단체표준 인증일자					단체표준 인증번호				
자본금				자산				매출액	

나. 종업원 현황

구분		합계	경영간부	기술직	사무직	기타
종업원 수(명)	본사					
	공장					
품질관리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담당자 경력	품질관리 교육기간

2. 제품 생산 및 판매현황

구분	생산량(수입량)	국내판매	수출	합계	비고
전년도(20 년)					
당해연도(20 년)					

3. 교육훈련 현황

구분	대상인원	교육인원	과정명	교육기관	교육이수율(%)	비고
경영책임(간부)						
일반 종업원						

4. 제조 및 검사설비 보유현황

구분	설비명칭	보유수량	제작회사	설치년월	교정일자
제조설비	1.				
	2.				
검사설비	1.				
	2.				